

제410회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1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12월7일(목)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5)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7)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94)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33)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7)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4)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19)
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34)
1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33)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38)
12.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274)
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9)
1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62)
1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92)
1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8)
17.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67)
18.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0)
19.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229)
2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2)
2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8)
2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11)
2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32)
2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64)
25.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51)
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1)
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8)
2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94)
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62)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2)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89)
3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88)
3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5)
3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0.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5)
4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5)
4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8)
4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0)
4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5)
4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0)
5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9)
5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4)
5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7)
53.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45)
5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7)
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3)
5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0)
57.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7)
5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3)
5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2)
6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1)
61.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8)
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5)
6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7.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7)
75.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7.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7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장 제출)
7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80.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6)
8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84)
8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6)
83.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11)
8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2)
8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6)
8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7)
8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9)
8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9)
8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8.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9.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0.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7)
10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4)
10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7)
10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94)
10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1)
10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7)
107.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0)
108.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2)
10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4)

1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1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1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4)
11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4)
1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6)
11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5)
11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1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1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4)
1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5)
12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6)
12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2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25.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26.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2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06)
12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7)
129.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8)
1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3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3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3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34.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0)
13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0)
13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023)
13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4)
13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3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4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29)
1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42.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8)
143.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5)
144.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00)
14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46.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47.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48.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4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4)
150.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5)
15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7)
152.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5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4)
15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1)
15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0)
15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5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58.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59.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60.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6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62.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6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6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65.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937)
166.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469)
16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6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6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00)
170.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6)
17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1)
17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7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1)
174.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8)
175.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9)
17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7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7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7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8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81.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8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83.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8)
184.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9)
18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3)

상정된 안건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5) … 10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7) … 10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94) …	10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33) …	10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7) …	10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4) …	10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19) …	11
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34) …	11
1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33) …	12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38) …	12
12.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274) …	12
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9) …	12
1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62) …	12
1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92) …	12
1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8) …	12
17.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67) …	12
18.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0) …	12
19.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229) …	12
2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2) …	12
2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18) …	12
2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11) …	12
2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32) …	12
2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64) …	12
25.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51) …	12
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5121) …	12
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21258) …	12
2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24494) …	12
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62) …	12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2) …	12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89) …	12
3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6
3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88) …	16
3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5) …	16
3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6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9
3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9
3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20
3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20
40.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20
4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20
4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21

4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1
4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5)	26
4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5)	26
4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8)	26
4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0)	26
4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5)	26
4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0) ..	26
5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9)	26
5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4) ..	26
5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7)	26
53.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45) ..	26
5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7)	26
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3)	26
5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0) ..	26
57.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7)	26
5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3)	27
5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2)	27
6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1)	27
61.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8)	27
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5)	27
6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7
6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7
6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7
6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7
67.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7
6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7
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7
7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7
7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7
7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7
7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7
7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7)	27
75.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7
7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7
77.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35
7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장 제출)	35
7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35
80.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6)	37
8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84)	37

8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6)	37
83.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11)	37
8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2)	37
8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6)	37
8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7)	37
8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9)	37
8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9)	37
8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7
9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7
9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7
9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7
9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7
9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7
9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7
9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7
9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7
98.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7
99.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8
100.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8
10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7)	38
10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4)	38
10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7) ..	38
10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94)	38
10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1)	38
10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7)	38
107.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0)	38
108.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2) ..	38
10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4)	38
1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8
11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8
11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8
1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4)	46
11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4)	46
1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6) ..	46
11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5) ..	46
11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6
11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6
11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4)	46
1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5)	46
12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6)	49

12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49
12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49
1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49
125.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50
126.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50
12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06) ..	50
12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7)	50
129.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8) ..	50
1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50
13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0
13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0
13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50
134.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0)	54
13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0) ..	54
13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023)	54
13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4)	54
13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4
13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4
14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29) ..	54
1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4
142.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8)	54
143.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5)	54
144.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00)	54
14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4
146.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4
147.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54
148.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4
14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4) ..	54
150.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5)	54
15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7) ..	54
152.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4
15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4) ..	54
15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1) ..	54
15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0)	54
15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4
15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54
158.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4
159.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62

160.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62
16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62
162.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62
16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62
16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63
165.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937)	63
166.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469)	63
16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63
16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63
16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00)	63
170.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6)	64
17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1)	64
17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64
17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1)	67
174.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8)	67
175.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9)	67
17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67
17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67
17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67
17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67
18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67
181.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67
18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68
183.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8)	68
184.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9)	68
18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3)	68

(13시50분 개의)

○위원장 김도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제1·2소위 의결 법안 등 고유법, 타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및 참석자 명단 등은 회의석상에 배부되어 있으며 심사 대상 안건, 검토보고 및 보고사항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5)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17)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94)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33)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7)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44)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병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소병철 위원입니다.

11월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규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6건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고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한편 검사는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소병철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1소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점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정점식 위원 정점식 간사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심사할 법안이 185건입니다. 그래서 법안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기존에 5분으로 해 왔지만 오늘은 3분으로 하고 그리고 혹시 추가로 더 쓰실 분들은 일이 분 더 요청해서 쓰시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 우리 정점식 간사님 좋은 제안입니다. 사실 12월 1일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500건이 넘는 법안이 계류돼 있기 때문에 12월 마무리되기 전에 최대한 법안 심사의 속도를 올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생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법들을 최대한 빨리 심사를 해서 국회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점식 간사님 제안하

신 내용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할 걸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특별한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오늘 회의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병철 간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타위법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12월 20일하고 12월 28일 이렇게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님께서서는 적어도 12월 19일과 12월 27일 정도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두 분 간사님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한동훈 장관님, 김상환 처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1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7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19)

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34)
1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33)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038)
12.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114274)
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0899)
1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62)
1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92)
1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8)
17.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125167)
18.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0)
19.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229)
2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4712)
2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4718)
2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11)
2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32)
2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5364)
25.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113951)
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121)
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1258)
2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494)
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262)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2)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89)
(13시57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8항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제31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까지 24건
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
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
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
서지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
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상정한 8항부터 31항까지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최재해 원장님, 한동훈 장관
님, 김상환 처장님, 박종문 처장님 출석하셨습니
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김도읍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저는 13항과 23항 법안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
과 감사원장께 여쭙보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지금 이 법은…… 어제와 그제께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
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는 법원 내에
대법원장추천위원회를 만들자 지금 그런 내용이
거든요. 여기에 대한 법원의 의견이 있으실까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현재로서는 저희들, 위
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법원장의 임명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관여할 뿐 저희 사법부가 관여
할 여지가 헌법상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서 저희들이 지금 의견을 뭔가 제시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않거나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갖
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헌법에서는 대법
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

는, 헌법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 지명자에 대한 지명권은. 대법원에서 관여할 것은 저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헌법 체계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법안에 대한 행정처의 의견은 법원이 관여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 개진이 좀 어렵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저희들의 기본 입장이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또 헌재사무처장께도 좀 여쭙볼게요.

최근에 이종석 재판소장이 취임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장추천위원회를 헌법재판소 내에 둔다 지금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헌법상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헌법재판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박종문** 지금 법원행정처장도 말씀하셨습니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헌법상의 임명과 국회 동의 그런 절차가 있고 그래서 또 제기되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실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입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 중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위 우리가 부동산특조법이라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동안 현대사의 불확실한 사회환경 또 전통적인 부동산 관리 등으로 인해서 등기부와 실제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시정하기 위해서 78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특조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특조법이 시행된 2020년부터 작년 8월까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보증인인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대면 확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권리 구제에 대해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 법이 종료되기 전에 국회에서 개정을 해 달라는 개정안이 6건이나 발의되었지만 작년에 우리 국회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 법안을 통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원님들께서—아마 지역마다 다 이런 고충을 안고 있을 겁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 더 심각합니다—최대한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지난번 코로나 때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국민들이 제대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정부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박용진 위원** 한동훈 장관님, 오늘 상정된 고유법안 중에 의안번호 16번이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보면 클린공익법인이라는 것을 신설을 하고 여러 규정 사항과 규제 사항에 대한 새로운 신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 법안에 대한 처음 소개를 들었을 때는, 좀 오래된 제도잖아요. 공익법인과 관련된 낡은 제도들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정도의 것 이다라고만 들었는데 지금 법안 내용을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재벌가에서의 편법, 세금 없는 의결권 상속 등의 편법으로 악용되는 데 공익법인들이 활용이 되고 동원이 됐었던 적이 많고 지금도 그런 지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안 개정안이 공익법인이라고 하는 형태의 또 다른 특혜 시비가 있지는 않은지, 낡은 규제를 벗어던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지켜봐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관심 많으셨던 분이니까, 저도 좀 유심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낡은 것은 벗어던지고 특혜 논란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오늘 올라온 법안들 중에 내용을 보면 공중 협박범 처벌하기 위한 법안 그다음에 무기징역 무기금고 집행……

○**법무부장관 한동훈** 몇 항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박용진 위원** 다른 사항.

○**법무부장관 한동훈** 몇 번이지요?

○**박용진 위원** 이게 10항 그다음에 14, 15, 31항입니다.

보면 전자장치 부착 법안,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성폭력 살인 같은 강력범죄, 마약 같은 치료가 중요한 범죄에 있어서 국민 불안이 크고 법무부 역할이

되게 중요한 법안들이 지금 쪽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는 이것이 다 국민적인 논란, 심지어는 위헌 논란 이런 것도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얘기했었던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된 논란도 ‘어디다 이걸 설치할 거냐? 조두순을 어디로 보낼 건데?’ 이게 남아 있는데 장관께서는 그 논의가 앞장서면 사실 이 논의를 아예 시작도 못 한다 이러면서 그 건 뒤로 빼자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걱정은 저는 그날 보면서 장관께서 총선 출마 안 하겠구나 제가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회적 논란을 직접 앞세우고 설명도 다 하셨는데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밀고 가면서 지금 오히려 입법예고가 12월 5일 날 이제 겨우 끝났고 앞으로 한 오륙십 일은 더 있어야 국회로 넘어올 텐데 논란은 다 뒤로 넘기고 이 필요성만 얘기하고 떠나시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총선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이시겠는데 이런 논란이 많은 제도의 개선 그다음에 법 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 있게 이후에 법무부가 책임져 갈 건지.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된 최대 논란은 이걸 어디에 설치할 거냐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로 떠넘기고 마는 건가. 전에 제가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전국에 있는 26개 보호감호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분명한 건지, 그때 검토라고는 얘기를 하셨지만 검토 대상으로 여전히 있는 건지 등등 몇 가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클린공익법인 관련된 건하고요 제가 지금 우려스럽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법무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먼저 16번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악용의 우려는 공익법인을 법률로써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법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법에서 문제, 저희가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지적하는 부분은 이 법이 배당가능이익과는 무관하게 일정 액수 이상을 배당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특례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있어서 자본총

실의 의무가 무너지게 되면 실제로 보면 공익법인의 어떤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법은 말씀하신 그런 것 외에도 좀 신중하게 봐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소위 단계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일련의, 의원님들도 의원 입법으로 내셨지만 흉악범들이라든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은, 사실 모든 법은 피의자나 범죄자를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점과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의 지점의 충돌 지점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낸 법들과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신 법들이라든가 권철승 의원님이 내셨던 전자장치법 이런 것은 저는 나름대로의 그런 논리들이 다 충분히 있고 건건이 충분히 논의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하면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할 거냐 말 거냐 단계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대로 방치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1년 넘게 준비한 답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할까, 국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법을 보시면 지자체와 정부가 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국회에게 떠넘긴다는 말은 좀 안 맞는 말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의원님께, 야당 의원님께도 설명드렸다시피 출입국·이민관리청에 관한 입법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좀 뜬금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됐습니다.

더 이상……

권철승 위원님 조금 빨랐어요.

○**권철승 위원** 죄송합니다.

권철승입니다.

감사원장님께 24번 의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의견이 아마 이렇게 나왔는 모양이지요?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감사원규칙 제·개정할 때 입법예고라

든가 타 기관 의견 조화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헌법기관과의 형평에도 반하므로 수용이 불가하다’ 이게 정리된 입장인 모양이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그게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내용입니다.

○**권철승 위원** 국감 때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두 번이나 답변하셨잖아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그 취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감사원규칙……

○**권철승 위원** 공감하는데 왜 수용이 안 된다는 겁니까? 이게 다른 헌법기관하고의 형평에 반할 게 없어요.

○**감사원장 최재해** 그때 예를 드셨던 대법원규칙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규칙으로 되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국민의 권리·의무하고 상관없는 것은 또 입법예고를 안 하도록 돼 있고 해서요.

○**권철승 위원** 대법원규칙은 대법원규칙 안에 그런 절차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저희도 그것도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거고 법으로 이렇게 격상시키는 건 조금 형평에 안 맞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고요.

○**권철승 위원** 여기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런 겁니다. 내용 다 좋고 단지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만 지키면 되는데 또 감사원법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감사원장 최재해** 그러니까 법에 만들 필요는 없고, 그런데 저희들이……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절차법을 안 지키고 있잖아요.

○**감사원장 최재해** 아니, 지금 법제사법 규정에 저희들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희들 빠져 있는 이유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이 규칙을 정하지 않습니까?

○**권철승 위원** 감사원이 완전히 그냥 무소불위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감사원장 최재해**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하고……

○**권철승 위원** 행정기본법에 감사원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왜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유념하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아니, 유념하고 운영할 게 아니지요. 이것은 법적으로 지금 완전히 일탈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원장 최재해** 아니요, 법적으로 일탈됐다는 건……

○**권철승 위원** 허, 참…… 우리가 지금, 국회가 감사기관……

○**감사원장 최재해** 다른 헌법기관의 예를 든 것도……

○**권철승 위원** 국회가 감사원 감사기관이잖아요. 이것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그리고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논리에 안 맞아요. 지금 그 앞에 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도 완전히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상황이잖아요.

○**감사원장 최재해** 그때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그때 그 취지를 담아서 한번 해 보겠다는 뜻이었는데 저희들이……

○**권철승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계속할 수 없으니까 1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예.

○**위원장 김도읍**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계속 일관되게 여쭙본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공화국 헌정체제가 지나치게 제왕적인 황제 리더십에 가까운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중에 예로 들었던 것 중의 하나가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 이걸 규정한 헌법이 유신 쿠데타지요, 그러니까 유신헌법에 처음으로 규정이 된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이제는 좀 민주화시킬 때가 된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이전, 유신시대 이전의 헌법에 대법원장은 법관회의에서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 규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예.

○**김영배 위원** 오늘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13항과 23항의 취지가 바로 그 내용을 정확히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제가 아까 전주혜 위원님 질문에 말씀, 저희들 법원의 입장은 어쨌든 지금 현행 헌법에 따라서는 대법원장의 임명 과정에

저희 법원이, 사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장은 저희들이 그런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입장인데 소위나 이런 입법 과정이 되면 아마 국회에서는 저희들에게 당신들 처지에서 갖고 있는 생각 같은 것들이 뭐냐라는 구체적 질문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질문에 대비해서 가능한 쟁점에 대해서 내부적 준비는 할 수 있지만 기본 입장은 바로 그런 입장에서 출발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영배 위원** 현재사무처장님도 마찬가지로신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박종문** 저희들도 마찬가지로라기보다는 아무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금 현행 헌법의 체계 이런 것들하고 또 국회, 결국 법 자체는 국회에서의……

○**김영배 위원** 그런데 2개……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박종문** 권한이지만 그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헌법에 보면 임명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에는 대통령이 기속돼야 된다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대통령이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헌 소지도 저는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자들의 입법 의지가 갑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그 부분의 논란이 사실은 선행,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더라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면 과연 우리 대법관 제청할 때 법원조직법의 규정을 그대로 따라서 위헌의 여지가 전혀 없는지는……

○**김영배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다소 논란이 되고 있다는 생각,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간단히, 답변서를 잘 준비를 해서 미리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예, 국회에서 예상되는 질의나 궁금한 점을 저희들이 예측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

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부터 31항까지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해 원장님, 한동훈 장관님, 김상환 처장님, 박종문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타위법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타위법을 의결하겠습니다.

3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88)

3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5)

3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4시17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32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부터 제35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까지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관련해서 차관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지난번에 우리 소위 논의하기 전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소위 심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 내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언론에 이 관련된 2건의 기사가 나온 것 혹시 차관님 보신 적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어떤 기사 말씀……

○**소병철 위원**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소병철 위원 마치 야당 위원들이 무슨 풍니를 부려 가지고 이 법안 심사를 지체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정정보도 요청까지 해당 언론사에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어떤 표현은 ‘법사위에 있는 어느 위원님이 그렇게 발언을 한 게 사실이다’ 이런 내용도 알게 되었어요.

차관님, 이 기사 보셨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자세한 기사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소병철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법 관련해서 나온 기사인데 이 기사도 제대로 안 보셨어요? 여기에 지금 제일로 문제된 게 뭐냐면 장애인단체들이 다 합의가 됐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아마 차관님한테도 그렇고 법사위원님들 여러 분 사무실에 장애인단체들이 오서 가지고 간절한 호소를 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저한테 문자가 한 100여 통 들어왔어요. 그런데 합의가 됐다는 이런 출처 불명의 기사가 나오니 어이가 없고, 특히나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제일 불만을 갖는 게 뭐냐면 복지부가 복지위에서 심사를 할 때 다 합의가 됐다고 발언한 이 부분이 거짓 보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국회에서는 대립된 장애인단체 어느 쪽도 무슨 편을 들려고 하는 취지는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지부가 최대한 2개의 단체들의 의견에 접점을 좀 찾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소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기억납니다.

○소병철 위원 그런데 복지부가 뭘 했는지 지금 더 심한 문자들이 들어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사무실도 장애인단체들이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여당 간사님 지역 사무실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복지부가 뭐 하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소위에서도 합의됐다는 말씀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찾아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말씀 주실 때도 전체회

의에서도 한 단체는 찬성하고 있지만 한 단체는 아직도 반대 입장이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뒤에 제가 그 두 단체를, 한 단체는 사실은 이룸센터에 있고 한 단체는 혜화동까지 가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 소위 이후에 찾아가셨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에 있는 단체 한자연에서는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또 한자협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복지위에서 장애인 3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어서, 장애인 권리보장법하고 장애인복지법, 자립생활 지원법인데 그때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탈시설 관련된 권리보장법 19조의 논의에 따라서 결국은 자립 지원법은 빠지고 장애인 권리보장법하고 장애인복지법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때 자립생활센터 관련 조항이 있었는데 이미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이 법사위에 가 있고 2소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소위에서 사실 통과가 됐습니다. 되고 나서 제가 같은 날에 바로 내려와서 소위장에서 박민수 차관하고 서로 교대를 해 가지고 ‘방금 소위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상태에서 이 법안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다음 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있으면서 그때 여러 가지 탈시설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론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자립센터에 이론이 있다 그래 가지고 다시 그것은 소위로 회부된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정점식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감사님.

○정점식 위원 차관님,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법과 관련해서 시행시기를 상임위 단계에서도 공포 후 1년 6개월 경과한 날로 이렇게 수정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때 말씀하신 게 관련 단체와의 협의 진행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법사위

제2소위에서도 역시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병철 간사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또 반대 단체들과 긴밀히 협의도 진행해서 법 시행 전에 이런 부분들의 이견들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저희 지역 사무실도 반대 단체 회원들이 찾아와서 점거를 해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뜻을 전달하시다가 간적이 있다는 것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개정취지에 맞게, 저희가 원래 6개월 된 것을 1년 6개월로 하면서 의견을 충분히 듣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 말씀 주신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양당 간사님들 참 수고 많으십니다.

○박용진 위원 저도 의견 좀……

○위원장 김도읍 박용진 위원님.

○박용진 위원 차관님, 저도 당부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간사님들께서 고초를 얘기하셨는데 다른 법사위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일방적으로 문자 와서 의견을 전달하시는 것도 국민의 의견이니까, 당사자들의 이해니까 잘 받아야 되겠지만 이 관련 법들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와서 또 2소위에서 양 단체 찬반 의견까지, 이렇게 의견 표명까지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이후에 이견과 당사자들 간의, 혹은 단체 간의 견해를 잘 조율하는 것 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구요.

일부 뉴스 보면 이 법을 통과시켜 달라라고 하는 장애인단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그리고 한국DPI, 장애인인권포럼 이런 단체들이 지지해 달라,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일부 단체에서는 개별적으로 전화도 오고 문자도 보내고 또 행동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심사숙고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관련 단체들과 또 장애인 당사자들만큼 안다고 자부할 수 없지요. 오히려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에서 이런 충돌이,

이 법이 어쨌든 치우개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단계 더 낮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표현, 당사자성과 관련돼서도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찬성하는 단체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담아 버리면 오히려 장애인 운동하시거나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조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도 또 저도 좀 고초는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법 개정취지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당사자성을 잘 조화롭게 저희가 하면서 1년 6개월간 열심히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제33항, 제35항은 전문위원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신건 하기 전에 신장 발언 잠깐 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도읍 예.

○소병철 위원 순천 출신 소병철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복지부차관계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법사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의원의 실명이 기사에 노출되고 또 그 내용이 어떠한 사감이나 사심 없이 법안 심사를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그런 보도가 있어서 유감스러웠습니다. 해서 정정보도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중에 어느 분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오늘 복지부차관 말씀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들이 장애인인데 장애인들에 대한 법안을 심사숙고해서 통과시키자는 그런 민주당 법사위 간사의 의견을 마치 어떤 사감 또는 법사위장에서 오고 간 표현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감을 가지고 법안 심사를 지체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부분은 정정보도를 해서 수정을 시켰습니다.

제가 굳이 신상발언을 한 취지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든 야든 가리지 말고…… 저희가 법안 심사를 할 때 어떤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2개의, 또 하나는 굉장히 큰 메이저 언론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마치 이 법에 대해서 민주당 간사가 사적인 어떤 사감, 법사위에서 오고 간 표현 때문에 그랬다는 것처럼 보도가 되어서 사실 굉장히 유감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지금 정정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정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해당 언론사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 부분은 법사위의 모모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있는 어느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항의를 하고 싶었지만 이런 일은 정말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 정말 유감스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남화영 청장님, 이기일·박민수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위원장님, 들어오기 전에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도읍 예.

○정점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굉장히 법안도 많은데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를 할 때 간단한 체계·자구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수정이 됐든지 아니면 부처의 반대 의견 이런 것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전문위원님들, 참고해서 효율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상정 및 전체회의 계류 타위법을

심사하겠습니다.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4시31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36항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대안), 제37항 문화재보호법 개정안(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만 제36항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의사일정 제37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7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 디지털콘텐츠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콘텐츠에 대한 개발 및 정책 추진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는 명칭 정비를 하였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반영되지 못한 명칭 정비 사항을 타 법 개정으로 반영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정점식 위원 아니, 잠깐만…… 36항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해서는 그때 타 부처 반대가 있었는데 지금 문체부와 기재부, 행안부가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배포를 하셨나요?

○전문위원 김영일 예, 했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렇게 조정안에 따라서 의결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36항 국민체육진흥법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고의적으로’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있는지가 일단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과실이라는 구성요건이 없으면 당연히 고의범인데 ‘고의적으로 축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그다음에 축소나 은폐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명확한 용어인지……

전문위원 어떤가요? 다른 법률에 은폐 또는 축소 이런 말을 쓴 경우가 있습니까? 일단 형법에는 은닉 이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은폐라는 말이……

○전문위원 김영일 법률에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어떤 법률이 그렇게 돼 있지요?

○전문위원 김영일 다양한 법률인데 제가 그 법률명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다른 법률에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은폐 이런 말이 있어요?

○전문위원 김영일 예.

○박형수 위원 형법상 처벌 범규의 구성요건에 은폐 이렇게 들어간 게 있던가요?

○전문위원 김영일 여러 가지 법률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고의적으로’라는 말이 이게 필요한가요?

○전문위원 김영일 입법취지가 단순한 그게 아니라 고의성을 가지고 하는 경우, 왜냐하면 그 뒤의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고의범으로 지금 상임위에서 그렇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상임위원회는 법률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법률전문가인 법사위원회에서 ‘고의적으로’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느냐 이거지요.

○전문위원 김영일 감염병 법률 같은 경우에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거나……

○박형수 위원 어느 법이요?

○전문위원 김영일 감염병예방법에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지금 여기 법조항을 보면 ‘누구든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당사자라면 자기의 범죄에 관해서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

또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습니까, 18조의 6에 대한?

○전문위원 김영일 예, 처벌 규정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내 범죄 사실에 대해서 내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처벌 받는다고요?

○전문위원 김영일 이 부분은 자기 범죄는 아니고 신고한 자입니다.

○정점식 위원 누구든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그러니까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가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누구든지에 해당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기구제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는 없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영일 다른 입법례들도 보면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한 자라든지……

○정점식 위원 아니, 그게……

○위원장 김도읍 전문위원님, 자기 범죄에 대해서 형법상 위증이나 증거인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법체계 하고 잘 안 맞을 수가 있다 지금 이런 지적이거든요. 이게 검토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김영일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소위보다는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면서, 전문위원님 조금 다듬어 보십시오.

○전문위원 김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체계상 문제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36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7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란 차관님, 최웅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0.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4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4시37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38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부터 제43항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대안)까지 6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의사일정 제38항부터 43항 정무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40항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채권금융회사 등이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존 약정에 따른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며 채권자인 채권금융회사 등이 내부적으로 예상하는 소멸시효 완성일을 그 완성일 이후에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그 변제의를 밝히지 않는 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의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7조가 잔존 분할상환금액에 대한 연체가산이자를 제한하는 내용만 담고 있어 제정안이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잔존 분할상환금액이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지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개념도 가능할 수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잔존 분할상환금액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을 때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제정안에 대하여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소액 신용대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정안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금융소비자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고 채권금융회사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하여 왔으며 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저신용 소액 차주에 대한 대출을 적용 제외 범위로 명시하는 등 채권금융회사가 소액신용대출 상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변론주의를 채택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은 채무자가 소송에서 주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내부적으로 예상하는 소멸시효 완성일을 그 완성일 이후에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소멸시효의 완성을 의제하는 안 제15조는 현행 소멸시효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당초 약정에 따른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안 제7조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는 제도의 의미가 상실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채무자의 성실 상환의지를 저해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윤종진 국가보훈부차관님,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 소병철 위원입니다.

보훈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예.

○소병철 위원 의사일정 제38항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립호국원이 지금 우리나라에 전부 6개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현충원이 있고요 호국원이 있고 민주……

○소병철 위원 호국원은 6개 있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전남에 입지를 선정해 가지고 진행되는 것도 호국원이……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지금 호국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 진행되고 있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예, 그때 위원님이 특별히 말씀 계시고……

○소병철 위원 그러면 현충원을 보훈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유족들의 불편함 또 관리의 이원화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유족들이나 보훈단체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한 겁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예, 다 했고요.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동의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견은 없습니다.

○**소병철 위원** 국방부는 당연히 동의하지요.

그런데 그동안 이것을 이관하지 못했던 것은 부처 간에 좀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나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국립묘지법이 2006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국방부에서 보훈처로 당시에 이관이 됐습니다. 당초 법률안에는 서울현충원까지 이관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서울현충원은 국방부에 남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국립묘지법 제도 자체가 보훈처에서 기존에 관장을 해 왔고요. 그리고 시스템이 대상자 자체가……

○**소병철 위원** 차관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방부에서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랬나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저희가 서울현충원 제외하고 11개의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를 관장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의 전문성이라든가 인적 역량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서울현충원 업무가 본부의 운영하는 데하고 좀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립묘지 업무가 보훈부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국방부 입장에서는 대개 그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소병철 위원** 오늘 그 안에도 보면 의전과 관련해서 국방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서울현충원이 이제 보훈부로 넘어오면 그전에는, 사실 서울현충원은 우리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1년에도 몇 차례 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러면 이 의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보훈부에서 매년 국방부에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예, 지금 현재도 국방부 안에 국방부 근무지원단이 있습니다. 있고 서울현충원이 있는데 서울현충원에서 국방부 안에 있는 근무지원단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관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소병철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요 서울현충원을 가 보면 국방부에서 사실상 지금 의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예, 나머지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현충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 서울현충원?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예, 현충원 소속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관리에 대한 것이 보훈부로 넘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인계인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대로 지금 국방부에서 하면서 협조를 받는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의전 부분은요 이게 현역 군인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군악대대를 보훈부에 파견해서 근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군 관련 인사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것 같은 경우에도 서울현충원 소속으로……

○**소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잘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차관님, 제가 오늘 질의드린 건 지금 이 내용만 보면 마치 보훈부하고 국방부하고 다 협의가 된 것 같은데 실무 부서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 번만 전체회의에 좀 계류를 시켜 주시면……

그 내용을 우리 의원실로 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서울현충원은 예를 들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삼부요인들이 수시로 가는 곳인데 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실무 부서 쪽에서 염려를 하는 의견이 의원실로 제출이 됐어요. 그런데 방금 차관님 말씀도 약간 좀 염려가 되니까 한 번만 우리가 홀드를 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한 뒤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지금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도읍** 그렇게 하시지요.

.....

○**송기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잠시만요.

유상범 위원님 먼저.

○**유상범 위원** 법안 40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

는데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지금 소멸시효의 완성에 대해서 소멸시효 완성일을 완성일 이후에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고 소멸시효 완성을 의제하는 안이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계약관계인데 계약관계에서 이렇게까지 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과 관련해서 완성을 채무자에게 통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납득…… 일반 민사법의 원칙을 반하게 하는 내용인데, 물론 채무자 보호를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과도한 어떤 체계의 정합성에 어긋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소영 부위원장님.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먼저 좀 생각해 보실 게 일반적인 상사채권이랑 또 금융채권이랑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채권이 연체가 되는 경우에 대부업체들이 계속 반복 매각하면서 불법 과잉추심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명확히 하자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멸시효……

○**유상법 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이지요 현실적으로 일정 기간 부실채권으로 확장이 됐을 때 그 채권을 전환시키는 거지. 그 전 단계에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이게 체계에서 맞는가요? 이렇게까지 예외를 둔다는 게 저는 납득하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단 관행적으로 현재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해서 다툼이 굉장히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조항이 들어갔고요. 하지만 또 거기 관련해서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산일과 관련해서 소송으로 갈 수가 있는 예외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유상법 위원**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정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되면 완성일 이후에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유상법 위원**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것으로…… 일반 민사 계약이잖아요. 금융 계약이니까 그걸로 정리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채무자에게 통지한다는 개념 자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제도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그것을 통지를 안 하게 되면 기존 추심업자들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채무자들한테 돈을 조금씩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나가서 끝난 게 명확……

○**유상법 위원** 아니, 그것은 민사상 최고라는 제도가 되면 소멸시효가 계속 갱신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제도를 아예 인정 안 한다는 얘기가요? 말씀하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아니, 5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통지를 안 하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들이 모르고 있어서 갑자기 한 ‘1만 원 정도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 갚으면서 다시 시효가 연장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해 달라고 한 겁니다.

○**유상법 위원** 그게 민사소송 소멸시효 제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을 완전히 인정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 소멸시효 제도는 그 부분에 대한 권리가 저희 변제 요청이나 이런 게 없을 때 나오는 얘기고 아예 어떤 변제를 독촉하거나 하는 최고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민사소멸시효 제도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그 전에 하는 건 괜찮은데 5년이 끝난 다음에 통지를 안 하게 되면, 통지를 하게 되면 이제 끝났다는 걸 갖다가 우리 채무자가 인식을 하는데 통지를 안 하게 되면 모르고 있다가 5년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상법 위원** 아니, 소멸시효 기간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돈을 안 냈으면 어떤 형태든지 최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멸시효를 어떻게 산정한다는 거야?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그러니까 앞에서 연장을 하시면 당연히 연장이 되는 거고요. 연장을 안 했는데 5년이 지나서…… 연장을 안 했으면 그냥 통지를 해 달라 그 정도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법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이 체계가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 한번 계류해서 설명을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류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 소병철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 검토 과정에 소멸시효

부분에 대해서 유상범 위원님도 의문을 적절히 제기를 하셨는데요. 여당 간사님께는 물어볼 수가 없어서 정무위 김종민 간사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또 이 법을 마침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정부 입법 과정에서 3년 동안 법원행정처가 아무런 이견이 없었지요, 부위원장님?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다가……

○**소병철 위원** 이견이 없다 갑자기 지금……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15분 전에 의견을 냈습니다.

○**소병철 위원** 예? 몇 분 전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한 15분 정도 전에 의견을 냈습니다.

○**소병철 위원** 글썄 이게 조금…… 법원행정처가 왜 이렇게 했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이 됐는데 이 회사들이, 채무자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예를 들면 ‘1만 원만 우선 납부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채무자가 1만 원이니가 가볍게 1만 원을 납부한다는 예를 드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금융위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던 것이 다시 지금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 글썄 그게 좀 이해가 잘……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아니, 실제로 그런 예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만 원, 1000원, 5000원씩 내라고 해서 이후에 다시 연장이, 그것 때문에 연장이 돼 가지고 계속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이런 조항을 만든 겁니다.

○**소병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글썄요. 어떤 별도의, 우리 위원님들 중에 몰사 출신들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지금 그런 의문을 표시하시는데, 시효가 완성돼 버렸는데 1만 원 납부했더니 시효가 연장된다? 그게 가능할지.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그 대부 계약 자체에 어떤 특칙을 두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살아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그런 예를 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그 논란은 차치하

고.

이 법이 사실 지금 어려운 서민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법안인 건 맞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소병철 위원** 지금 이 의문 때문에 정무위 민주당 간사한테 의문을 제기하니까 ‘이 14조부터 17조까지를 법사위에서 삭제하는 데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다.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 이러는데 14조에서 17조를 삭제할 때는 금융위 입장에서는 보호의 제도로 의미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발의자 본인 의원님이나 정무위 간사 위원님처럼 ‘하루빨리 법을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니까 14조에서 17조를 삭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14조에서 17조까지 있으면 더 좋기는 하지만 일단 굉장히 시급한 법이기 때문에 14조에서 17조를 삭제를 하고서 통과할 수 있으면 바로 통과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소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체회의에 한번 정도 계류……

○**위원장 김도읍** 예.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채권자나 아니면 추심회사에서 소액이라도 갚으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소액을 변제하고 나면 그게 마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처럼 돼서 다시 채무가 살아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단순히 그렇게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소멸시효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법리적으로 다툼다 하더라도 시효 이익의 포기로 다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경우에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규정을 두는 입법취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민법 체계의 근본적인 틀을 깨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러면서 채권자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시효중단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다 판단해서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인데 단순히

기간만 지났다고 해서 그냥 통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멸시효 중단 사유나 이런 여부 등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해서 채권자에게 그와 같이 그 부담을 주는 것, 사실 중단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변론주의에서 항변 사유로 두고 있는 것인데 그 항변 사유의 입증 책임을 다 채권자에게 돌려서 자기가 그걸 확인하고 이것은 중단 사유 없이 채무가 소멸시효로 완성됐구나, 소멸시효로 끝났구나 라고 하는 걸 다 판단해서 채무자에게 친절하게 ‘소멸시효 완성됐으니까 앞으로는 돈 안 갚으셔도 됩니다’ 그 통지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떤 독촉을 하더라도 돈 내시면 안 됩니다’ 그 통지를 지금 채권자보고 하라는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를 든다 하더라도 그 예는 저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 볼 수 없는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틀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법리적으로는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명확히 하려고 조문을 넣은 건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삭제하고 통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런데 이게 몇 개 조문을 다 삭제하는 것도 지금 당장 판단하기에는……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계류를 해서, 사실은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죄송한데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 없이도 나머지도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그냥 나머지 부분을 먼저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새로 개정을 올리겠습니다. 이것 그냥 제외해 주시고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 아까 수석이 보고하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가지고 저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걸 이 자리에서 바로 많은 조문을 통째로 삭제해서 법사위에서 하는 것은 자칫하면 정무위원회의 권한을 많이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계류시켜 주시고 정무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위원장 김도읍** 아니, 정무위 권한 침해하는 게…… 정무위에서 그런 의견이 왔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정무위 의견, 동의 받았습니다.

○**송기헌 위원** 여당 간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점식 위원** 저는 통보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어차피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올해 12월 달에 본회의가 두 번 정도 예정이 됩니다.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면 그 두 번 전날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거거든요. 그래서 법사위가 12월 19일, 12월 27일 이렇게 두 번 일단은 잠정적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때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몇 개 조문을 그냥 완전히 삭제하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약간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치하게 전문위원님 조금 연구해 보시고 금융위하고 우리 법사위원님들하고도 고견을 좀 받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위 입장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체계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 조문이 또 들어갔을 때 의미도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만 손질을 하면 법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겠다 싶네요. 해 보십시오.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약간 보충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 부위원장님, 우리 울산 위원들끼리 의견을 나눠 보면 지금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나면 1만 원을 내더라도 소멸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민법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의견이 일치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예를 들면 소멸시효가 한 한 달 또는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채업자가 채무자에게 1만 원만 내면, 예를 들면 6개월이면 유예를 해 주겠다 그러면 채무자들은 순진해서 1만 원 내고 이제 기한의 이익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하는 함정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 부위원장님, 그게 훨씬 더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누누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도 이상해서 우리 여당 간사께 물어봤더니 여당 간사님실도 좀 설명을 하겠다고 사실은 했는데 정 간사님실에는 설명이 안 돼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개인 채무자들, 특히 영세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장님 다 공감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빨리 검토를 좀 하셔서 가지고요 다음번 법사위 전에 여기에 대해서 정무위하고 의견 조정을 하시고.

오히려 지금 부위원장님이 예로 드신 예보다 우리들이 의논해서 실제 있었던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거다, 그런 경우를 구체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집중적으로 정무위, 법사위 그리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 하셔서 다음번 법사위 때까지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시급한 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의결……

차관님.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위원장님, 아까 저희들 서울현충원 이관 관련해서 소병철 위원님께서 의장대대 지원 관련해서 좀 염려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소병철 위원 아니, 의장대대뿐만 아니고요 그 안에 지금 우리 현역 군인들이 거의 상주하고 있잖아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저희들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소병철 위원 차관님, 오늘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실 때 법사위가 또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저도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정리된 부분 의원실에 와서 말씀하면 다음 주에라도 상정할 수 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국가보훈부차관 윤종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8항, 40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부터 43항까지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진 차관님, 조홍선·김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회의실 환기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도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5)

4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5)

4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8)

4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0)

4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5)

4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0)

5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9)

5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4)

5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7)

53.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45)

5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7)

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3)

5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0)

57.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7)

5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193)
 5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2)
 6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281)
 61.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8)
 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5)
 6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7.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7)
 75.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44항 간선급행버스 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부터 제76항 주차장법 개정안(대안)까지 33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만 75항, 76항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나가시는 동안에 잠깐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도읍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소병철 위원 예, 신상발언도 겸해서.

제가 조금 전 정회하기 전에 법사위에서 법안심사와 관련한 것을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회 시간 중에 중앙 언론 기자한테서 우리 대변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그분 말씀이 국민의힘 어디어디에서 어떤 특정 법안을 민주당, 특히 법사위 간사가 반대를 해 가지고 상정이 안 된다,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 법안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모 기자에게 ‘안 기자님, 이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러면 차라리 언론에 당당히 나서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익명의 벽 뒤에 숨어 가지고…… 지금 무슨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장애인복지법,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지금 법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정말 이것은 신사협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히려 언론을 이용하는 것은 야당이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지요. 여당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더군다나 법사위 간사를 특정해 가지고 자꾸 이러시면 법사위 간사를 바꿔치기해 달라고 차라리 요구를 하십시오.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러십니까?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간사님.

○정점식 위원 정점식 간사입니다.

말씀하신 법안이 어느 법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는데 오늘 아침부터 특정 법안에 대해서—어젯밤에 오늘 심의 안건이, 심사 안건이 다 공개가 되었으니까—이 법안이 왜 상정이 안 됐느냐라고 저한테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할 게 있다고 그렇게 해서 상정을 미루자고 이야기해서 상정이 되지 못했다고 제가 답변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대 재생산이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병철 간사님을 겨냥해서, 저는 언론보도를 보지는 않았습시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전화한 것도 아니고……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법안이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은 법안이다 보니까 왜 상정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역시 전화가 왔었고 22일 날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을 때도 그 전에 전화가 와서, 이 안건이 공개되면서부터 계속 전화가 와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만일 그 부분이……

저는 어느 특정 위원 개인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상정 안 된 게 아니다, 다만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상정을 보류하자고 말씀해서 상정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언론에 그렇게 확대 재생산이 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병철 간사님께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그 정도 하시지요.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법안이 많은 관계로 몇 가지 추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도시재정비 추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등을 추가하고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면제받을 수 있는 부담금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담금 감면은 부담금관리법에 따라 근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다른 입법례와 같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드론 항공촬영의 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구축·운영 중인 드론 정보체계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

한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등에 대한 보안을 엄격히 유지하려는 군사기지법의 입법 취지, 공간정보 제공 시 군사시설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안 처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관련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정보의 범위와 제공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요건을 신설하고 성범죄·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종사 제한 사유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논의되어 의결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범죄 전력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당연시하고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현재 종사자들에 대한 적용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무부는 개정안이 형법상 상습장물죄 등 상대적으로 경한 범죄에 대하여도 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 건축규제 및 안전진단 완화 등 특례사항과 규제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 2항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포함하여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이 법에 따른 특별위원회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재생법의 개정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사항의 심의주체에 대한 혼선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 의사일정 46항부터 49항, 54항, 56항, 59항, 60항 등 8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

로 보았고, 그 밖의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백원국 국토부2차관님 출석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우선 58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보면 애초에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는
전체적으로 ‘철도신호기 취급자 등’ 해서 여러 가
지 신호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했는데 국토
위 논의 과정에서 역장에만 한정하도록 한정을
해 가지고 법사위에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법사
위에 와서 국토위에서 삭제했던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석께서 수정의견을 내 가지고 지금
제출했던 말이지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요, 차관님? 국토위에서 삭제를 한 이유가 있나
요?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을 취급하
는 사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저것을 하지 않도
록 협의내용을 작성·보관하는 의무에서 제외시
켜 놔단 말이에요, 역장만 하게 하고. 그런데 여
기에서는 다시 또, 법사위에서는 국토위에서 삭
제한 내용을 다시 추가를 해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일단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신호기 취급자 등은 관할 역 책임자의
지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무를 신호기 취
급자 등에게까지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한 의무
부과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신호기 취급자 등
을 제외하고 관할 역 책임자에게만 의무를 부여
하는 쪽으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 검토보고에서 ‘협의 주체
와 작성·보관 주체 간 불일치 문제가 있다’, 관
할 역 책임자가 부재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대해서 신호기 취급자 등도 포함시
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법사위 수정안에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송기현 위원 국토위에서는 그런 논의가 안 됐

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국토 상임위에서
는 일단 그렇게 관할 역 책임자가 부재중인 것까
지 염두를 못 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면 국토위가 논의를 부실하
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부재중인 경우까
지 감안을 하면 역장이 없을 때 신호기 취급자
등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송기현 위원 차관님도 국토위 소위 할 때 논
의에 들어가셨을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면 지금 국토위 모양이 이상
하게 된 거잖아요. 국토위에서 빼 가지고, 의원안
에 들어가 있던 것을 국토위에서 뺐는데 법사위
에 와서 ‘야, 국토위에서 잘못 뺐으니까 다시 넣
어야 된다’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국토위에서 논의
할 때 얘기해서 거기에서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니
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미처……

○송기현 위원 비슷한 게 또 있어요.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여기 보면
‘출자에 참여해서 설립한 법인’ 이렇게만 해 놔
가지고, 출자 거기 한번 보시지요. 이게 67항인데
‘출자에 참여해서 설립한 법인’ 이렇게 났는데 이
것이 어느 정도 출자해야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얘기는
‘50% 정도까지 지분이 있는 걸로 한 경우에 한
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수정안을 해 놓았던 말
이에요.

그런데 우리 법사위에서 보면 이게 50%가 좋
은 건지 아니면 70%까지 돼야지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30%만 있어도 되는 건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국토위에서 논의할 때
논의가 됐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토위
에서 할 일을 법사위가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앞으로 좀 더 면
밀하게 봐서 상임위에서 그런……

○송기현 위원 50%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
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보통 일반적으로
공영개발은 타 법에서도 50% 이상인 경우, 공영
개발의 요건으로 공공지분이 50% 이상인 경우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기현 위원 50%로 하면 다른 법하고 균형이 맞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일반적으로 다른 타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지금 72항이 똑같은 내용인데 사실 비슷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국토 부하고 협의해서 수정을 했어요, 국토위에서 논의가 안 되고 그런 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앞으로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내가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는데 적절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까?

○송기현 위원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국토위의 어떤 권한을 침해하는 건지 판단이 안 되니까, 저희는……

○위원장 김도읍 그래서 또 법사위가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66항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전문위원도 보고한 것처럼 이 법조항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그리고 법무부 모두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66항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도읍 전체회의 계류 의견이시지요?

○장동혁 위원 예.

○위원장 김도읍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62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차관계.

이 법의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관련 단체, 예를 들어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랄지 또 한국통합물류협회 지금 이러한 관련 단체에서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견 해소가 되었을까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 수수료 부과 기준을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정상적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전주혜 위원 취지를 여쭙보는 게 아니라고, 관련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의 이견이 해소가 됐는지 그 상황에 대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통과 후 시행규칙 마련할 때 보다 폭넓게 의견 수렴을 통해서 마련할 그런 계획이고요.

일단 개정안은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도록 돼 있는 운송주선약관에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추가하는 것인데 사업장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혜 위원 물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랄지 또 한국통합물류협회 이런 단체들의 의견이 아무튼 국토교통부령을 만들 때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추가해서 64번 여쭙보겠습니다.

64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경우도 저는 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발주자가 지정하는 재료나 지시로 인해서 수급인이 담보 책임을 지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다만 이번에는 단서를 만들어서 알면서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

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실까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일단 기본적으로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면책조항을 두는 건데요. 그런데 수급인이 거기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또 성실 시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단서조항을 지금 만든 겁니다.

○전주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에는 저는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정성희 수석, 51항 도시재정비 추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재부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의결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예.

○정점식 위원 수정의견이 지금 올라와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예, 지금 저희가 주서로 반영을 했습니다.

○정점식 위원 예.

○위원장 김도읍 됐습니까?

○정점식 위원 예.

○위원장 김도읍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 차관님, 소병철 위원입니다.

안건 59호 관련입니다.

지금 개정하기 이전에 보면 12조에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주유소 설치와 관리’ 이렇게 돼 있는 걸 개정안에서 여기에 지금 추가를 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유료도로로 지금 한정이 돼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모든 도로가 다 유료도로입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는 재정고속도로입니다.

○소병철 위원 유료도로라고 하면 통행료를 내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러면 통행료를 내지 않는 도로에 대한 경우는 도로공사에서 일체 관여를 안 하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지금 유료도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가 있고요. 그것을 재정고속도로라고 그러합니다. 그리고 민자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하고 있는 지자체 유료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유료도로가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를 지금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사실 도로공사의 포션이 대부분입니다, 재정고속도로.

○소병철 위원 방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이런 부분들은 지금 도로공사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민자도로도 마찬가지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건데요.

지금 친환경 연료 보급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지금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휴게소에 충전시설 설치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소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 중에는 유료도로 아닌 도로 아니면 도로공사가 관리하지 않는 도로가 있다고 지금 차관님도 설명해 주셨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러면 도로공사가 관리하지 않는 도로의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 아니, 지금 이와 같은 시설을 도로공사에만 추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냐고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일단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도로공사인 경우에도 지금 사실 민간 공모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통해……

○소병철 위원 차관님,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친환경 자동차 공급을 위해서 이런 연료시설들을 지금 유료도로에 설치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법의 형평성 부분에서,

도로공사법에 보면 분명히 유료도로로 한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도로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형평성 부분에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현재 현행법은, 다루고 있는 법은 도로공사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관리청을 통해서,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서 규정이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소병철 위원 글썄,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차관님한테 돌려서 물어본 건데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친환경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도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도로공사법 유료도로만 하시니까 그걸 문제 지적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검토해서 그러면 좀, 한 기일 이것 홀드를 할 테니까요. 지금 차관님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간사님, 이게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국도로공사법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로공사법에 하는데 일반도로는 대부분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차관님, 국토교통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입법을 통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위원장 김도읍 그래서 간사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간사님 취지를 살리는 법 개정 방향이라든지 연구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 법은, 어차피 한국도로공사법에는 일반 무료도로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은 법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은 통과를 시키고.

간사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차관께서 따로 보고를 하고 또 지자체하고 협업이 필요하다면 그 방법도 따로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소병철 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씀 백번 맞는데요. 사실 입법에 대한 부분을 국토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미리 조사를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역시 차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전혀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다른 법에 대해서 똑같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자료 보고를 받아 보고, 다음번에 특별한 문제점이나 좀 더 시간이 필요하면…… 우선 이 법을 먼저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도읍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차관님, 유상범 위원입니다.

53번입니다. 드론 항공촬영 촉진법은 지금까지 군사시설에는 아예 촬영을 못 하게 돼 있는 규정 때문에 활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원칙은 허용하되 예외에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서 국방부와 조율해서 항공촬영의 범위를 정리하거나 촬영된 부분을 어떻게 삭제할지를 정리하는 구체적 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정리를 만드신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금지하는 구역을 항공촬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알려 줘서 혼선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까지는 그 같은 혼선이 계속 있고 실질적으로 허가 받기가 대개 어려웠던 상황인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실질적으로 금지 구역은 허가가 곤란한 그런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국방부에서 이것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조율이 잘될까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국토부에 국민들에게 그것을 공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금지구역을 공개하겠다는 걸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다 정리된 것이네요, 국방부랑 협의.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리할 때 어떻게 규율할지까지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64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구조적 하자만 발생하면 10년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중요한 구조내력 부분과 기타 부분으로 나뉘서, 사실은 하자 보증기간을 줄이게 정리하신 건데 이걸 추진 방향은 정확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인한테 너무 일방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법안이었는데 균형을 맞춘 법안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이 법이 사실은 민법 669조에 규정돼 있는 내용을 28조 2항, 3항 이쪽에다 편입을 시킨 것인데요. 그 규정의 내용을 살려서 28조 2항, 3항 이쪽에 다 포함을 시킨 것인데, 이와 같이 민법상의 규정을 굳이 넣지 않아도 괜찮을 텐데 여기다 이렇게 규정에 다시 명시한 이유는 뭐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하자 책임 면책사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맞습니다. 관련 규정 2항, 3항. 이게 별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건설업자 간의 갈등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런 부분들에 좀 문제가 있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자……

○유상범 위원 이게 기본법이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민법에 규정해 있는 것을 건설현장에 맞추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다시 재정리해서 입법화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 법 찬성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차관님, 75항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금 주차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이게 지금 만약에,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 지금 이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가 편리하게 아무 곳이나 놓고 가면 다음 사람이 거기 또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때문에 이 산업이 활성화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정된 주차장에만 주차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 이 산업이 발전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충분히 해 보셨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업계하고도 검토를 같이 했고요. 지자체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요즘 개인형 이동수단을 통한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보행 안전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하고 있고 사고가 자꾸 증가함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질서는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박형수 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조례로 정하는 그 주차장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정하는……

○박형수 위원 그러면 그 조례로 정하는 주차장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띄엄띄엄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이 산업은 다 죽는 것인데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런데 지역민들이 이게 마지막, 라스트 마일에 대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지역 수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한, 필요한 곳에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지자체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동의를 해 달라 그렇게 얘기……

○박형수 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수많은 도로에 지금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는 걸, 주차장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것은 탁상공론이네요. 많이 만들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 이 문제는 내가 하나 지적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해외 입법 사례는 검토해 보셨나요? 우리처럼 이렇게 주차를 지정된 장소에만 하도록 제한하는 해외 사례가 있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해외 사례를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주차 부분까지 검토가 된 것은 지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형수 위원 그다음에 해외 사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죄송합니다.

○박형수 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법률들을 규제할 때는 주차허용구역이 아니라 주차금지구역을 정해야 돼요. 어떠한 어떤 곳에,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또는 사고가 빈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주차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차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야지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곳에 다 주차하지 못하고 지정된 주차장에만 주차할 수 있다 그렇게 법을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면 이 산업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다른 말 또 있습니까, 하실 말씀?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지정주차구역은 일반적으로 보도에 지정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네거티브로 만일에 가게 되면 온 보도에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고 마음대로 방치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행자의 안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포지티브 방식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하는 것이 공공의 안전상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형수 위원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지정해야 되겠어요? 실제로 가능한지 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계류를 해 놓고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하나, 경찰청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네거티브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박형수 위원 그 부분은 저는 당연히 경찰서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경찰청은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부처고 국회에서는 그것도 고려해야 되지만 이 산업의 미래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것이 정치가 하는 일이고 국회가 하는 일이지.

○위원장 김도읍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 차관님, 67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아마 저희 의원실에 이 법안에 대한 취지라든가 대상, 적용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 대통령령에 대해서도 같이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어느 정도 틀이 잡혔습니까? 노후 계획도시의 정의에 대해서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대통령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은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일단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이상의 택지고요. 그러면 그 택지가 뭐냐? 그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도 있고 그 외에 시행령 안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이 있고 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급촉진지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김승원 위원 제가 이 법안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범위가 어떻게 보면 노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굉장한 관심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실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의원실과 한번 협의를 꼭 해 가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차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지금 저희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관련 사업들은 가급적 포함을 다 시키려고 합니다.

○김승원 위원 저희 의원실에 보고도 해 주시고 저희 의원실이 알고 있는 의견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정점식 위원 수정의견 때문에……

○위원장 김도읍 예, 간사님.

○정점식 위원 지금 76항과 관련해서는 부처에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제6조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해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76항 말입니까?

○정점식 위원 예, 주차장법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6항부터 49항까지, 54항, 56항, 6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4항, 45항, 50항부터 53항까지, 57항, 58항, 61항부터 65항까지, 67항부터 74항까지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6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9항, 66항, 75항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여 의사일정 제55항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다음에는 위원님들 질의할 때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 오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76항이 통과된 겁니까? 어이가 없는 게 이 자료를 저는 지금 전달받았어요.

○위원장 김도읍 수정의결로……

○소병철 위원 아니, 수정안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자료를 이제 주고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정점식 위원 못 찾으신 것 아닌가요?

○소병철 위원 이제 들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다 배포 안 했나요, 행정실에 서?

○소병철 위원 여기 쌓아 놓은 자료 속에 넣어 놔 버리면 어떻게 알아요.

○정점식 위원 우리도 다 그런 식으로 그냥 쌓아 놔습니다.

○소병철 위원 행정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도읍 이석하십시오.

○소병철 위원 검토할 틈이 없잖아요. 이렇게 자료 쌓아 놓은 데다가 거기다 넣어 놔 버리면…… 의원실로 미리 보내 준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 지양하세요, 앞으로.

○위원장 김도읍 각 의원실에서도 회의 자료들은 미리미리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십시오.

○소병철 위원 다음번에는 이러면 통과에 강력히 반대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야지 찬성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정점식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이미 저희 방에서 마련한 이 자료에 다 수정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고가 저한테는 돼 있는데……

○소병철 위원 정 간사님한테는 보고가 충실히 됐지요.

○위원장 김도읍 사실 검토보고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점식 위원 수정안 마련되면 즉시즉시 각 의원실로 보내 드리세요.

○소병철 위원 검토보고서가 안건 확정되면 그 때서야 오니까요.

○위원장 김도읍 각 의원실 다 모두 분발합니다.

77.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7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장 제출)

7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6시05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77항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부터 제79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3건의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들의 임용제외기간의 호봉·연금 등에 대한 불이익 해소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를 참조하여 안 제6조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이 퇴직수당 지급 시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규정 및 산입되는 기간의 연금액 산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그 일시, 장소, 안전 등을 피·가해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심의위원회 회의 정보를 피·가해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등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나주범 교육부차관직무대리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게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교육부차관직무대리 나주범 위원님,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직무대리님 말씀하십시오.

○교육부차관직무대리 나주범 79항인데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 새 학기 시작에 맞춰서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미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일에 맞춰서 이번 개정안 부칙 시행일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런 판단이 언제 셧습니까?

○교육부차관직무대리 나주범 이 법안이 교육위를 올해 6월 달에 통과했는데요 절차가 빨리 진

행될 줄 알고 만들 때는 ‘공포 후 6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이 절차가 지연되면서 공포 후 6개월을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언제 인지하셨냐고요.

○교육부차관직무대리 나주범 저번 교육위 통과가 금년 6월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최근에 계속 지연이 되면서 이미 교육위 통과된 다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전문위원실에 단 하루라도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 줬으면 이렇게 수정의결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언제 인지하고 법안 심사하는 현장에서 그렇게 수정안을 제시하시나 이 말이지요, 제가.

○교육부차관직무대리 나주범 그런데 여기 법안이 교육위에서 금년 6월에 통과되면서 절차가 빨리 진행될 줄 알았는데 지금 법사위에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위원장 김도읍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정을 하기는 하는데……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김도읍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 소병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에는 말씀하셨나요?

○교육부차관직무대리 나주범 ……

○소병철 위원 답변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교육부차관직무대리 나주범 아마 제대로 저희가 차분히 설명을 아직은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이 자꾸 언제 인지했냐고 물어보는 것이 지금 더군다나 의결하려고 위원장님이 말씀까지 했는데 ‘잠깐요’ 그러더니 난데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교육부 내에서도 회의하면서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최소한도 전문위원실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루 전이라든지 해야지 어떻게 국회 입법 심사를 이런 자세로 응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부차관직무대리 나주범 미리 전문위원실에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이것은 제가 이 법사위 회의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법사위에 전문위원이 왜 있는 거겠어요?

○교육부차관직무대리 나주범 미리 설명드리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병철 위원 지금 차관직무대리님 책임입니까, 국·과장님 책임입니까?

○위원장 김도읍 간사님……

○소병철 위원 엄중 경고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국회가 반성할 점도 많아요. 사실 이 의사일정이 교육부에 오늘 심사된다고 통보가 간 것은 아마 어제 저녁일 거예요. 저녁인데 그 부분도 국회가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또 지금 이 시간이 몇 시입니까? 오후 4시가 넘었지 않습니까? 오전도 경과가 됐고 그러면 그 말씀을 미리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교육부차관직무대리 나주범 예, 그렇게 하겠는데요. 아무튼 이것은 새 학기에 맞춰서……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그 내용은 취지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새 학기 맞춰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정점식 위원 3월 1일로 하시지요.

○소병철 위원 내용에 대해서야 저희가 이의가 없지요. 다만 그냥 이런 식으로 와서 법사위 심사를 ‘잠깐’ 해 가지고 스톱시켜서 하면 이런 경우는 재발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취지에서 말한 겁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7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9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무대리님은 지금 현재 직책은 됩니까?

○교육부차관직무대리 나주범 지금 차관보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차관보로 계십니까? 바쁘시기

는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직무대리 나주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석 하셔도 되겠습니다.

80.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6)

8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84)

8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6)

83.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11)

8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2)

8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6)

8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7)

8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9)

8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9)

8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8.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9.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0.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
복지위원장 제출)

**10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
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7)

**10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4)

**10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3717)

10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94)

10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1)

10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7)

107.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0)

**108.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20442)

10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4)

1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1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1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
위원장 제출)

(16시13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80항 국민영양관리
법 개정안부터 제112항 식품위생법 개정안(대안)
까지 33건의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만 103항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
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2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가 누락

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출생 미
신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등에 대하여 전산관리번호를 임시
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
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추어 보
호출산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비식별화가 필요
한 대상자에게도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대상자에 출산·양육 등에 대한 상
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
기임부, 출산 후 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88항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겸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전담인력의 업무 수행 내역 등
을 기록·보관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환
자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및 협조 요청과 전담
인력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환
자안전 업무에만 전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환
자안전 관련 인력 부담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으로 중소의료기관의 현실을 간과하는 것이고,
전담인력의 업무 수행 내역 등을 기록·보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전담인력의 업무 특성상
진료기록 등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신
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
니다.

의사일정 제92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은 법인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여 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기술표준
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
산 등을 지원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에 임원으로
서 원장, 이사, 감사 등을 두되 원장은 보건복지
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치의학연구원의 주요 업무
는 임상 및 산업화 촉진 정책 수행인데 현재 한
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치의
학 산업 등 보건산업 육성·진흥을 이미 지원하

고 있고 치의학산업만을 위한 연구원 설립은 현행 보건산업 지원과의 중복성, 타 분야와의 형평성 논란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범위를 임상연구와 산업진흥 중심으로 하고 기초연구는 최소화하여 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법상 연구기관들과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6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에 환기시설 등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 및 관리·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업의 등록과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의료기관 개설 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현행법 제16조제4항에 따르면 세탁물처리업의 변경 및 재개업 신고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므로 같은 항 후단에 이를 명시하는 등 일부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일괄 개정 시 이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적법한 신고를 하였음에도 민원 등을 사유로 한 수리 거부·지연과 그에 따른 불이익이 의료기관 등에 전가될 우려가 있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게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거나 품질관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현행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부적합 판정 특수의료장비 사용 시 현행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품질관리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의사일정 제84항, 85항, 87항, 89항, 90항, 91항, 97항, 99항, 100항, 101항, 102항, 104항, 106항, 107항, 110항, 111항, 112항 등 17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80항, 81항, 83항, 86항, 93항, 94항, 95항, 98항, 105항, 108항, 109항 등 11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박동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이기일 복지부1차관님, 박민

수 2차관님, 오유경 식약처장님, 지영미 질병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또한 92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대안) 관련하여 안상열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계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차관님, 82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여기에 수정안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 안 마련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이기일입니다.

사회보장 관리번호 부여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에 보호관찰법이 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기임산부 및 위기임부에 대해서는 똑같은 번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별도의 항을 추가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게 7조의2제1항제4호 이것 신설했다는 취지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반영 요청드립니다.

○박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85항 법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5항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의협의 반대 의견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의료급여법입니다.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법이, 사실은 국민건강보험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있기 때문에 같은 선에서 저희가 그것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장동혁 위원 의협에서도 그 법 취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괄 전액 환수를 하다 보면 의사들로서는 이런저런 사정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진료한 부분까지 환수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의협하고 이야기는 한번 하신

건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사실은 국민건강보험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똑같은 조항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맞추는 차원에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장동혁 위원 그리고 88항에 대해서도 의협에서 ‘신중 검토하자’. 그런데 신중 검토하자고 하는 게 다 좋은데 이렇게 전담인력 두고 하면 결국은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전담인력 제도를 두면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2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법안을 심의할 때 의견이 나왔었고 저희가 답변드린 것은 현재는 전담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면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가에도 일부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다만 전담인력을 산정한 수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비용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맞게 수가도 검토를 해서 의료기관이 추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동혁 위원 어쨌든 이 부분 법 자체를 반대할 것은 아니고요. 협회에서 지금 반대 의견을 두고 있어서 그 취지가 뭔지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전체회의 계류했다가, 곧 다시 법사위가 있을 거니까 그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몇 항, 몇 항이지요?

○장동혁 위원 85항, 88항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85항, 88항?

○장동혁 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기재부에서 누가 나와 계신가요? 복지안전예산심의관님 나와 계신가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안상열 예.

○장동혁 위원 92항에 대해서 반대 입장 표명하셨는데……

이어서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장동혁 위원 이게 공약사항인 건 알고 계시지요, 지역 공약사항인 건 알고 계시고?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안상열 예.

○장동혁 위원 기재부는 지금 예산 때문에 반대하는 것 같은데 총리실 주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했고 국조실하고 과기부하고 복지부가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처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단순히 예산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

그리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연구기관이긴 하지만 지금 산업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치의학연구원을 대체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은 최종적으로 입법이 돼도 기재부와 예산 협의가 돼야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이후의 사업 진행은 결국은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공약사항으로서 중요한 사업인 것을 감안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안상열 답변……

○위원장 김도읍 예, 심의관님 답변하십시오.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안상열 복지안전심의관 안상열입니다.

저희도 예산을 하지만 치의학 연구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상임위에서 저희가 의견 부여 기회를 못 받아 가지고 토론을 못 드렸는데, 저희의 염려 사항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건의료연구원의 영역하고 보건산업연구원의 관련 규정에 중복되는 면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과기부와 복지부의 사항은 이게 R&D 나 산업화나 이걸 합의한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치매예방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과목별 연구원으로 퍼질 것 같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나와 있는 건 애초에 590억을 요구했었는데 그런데 이 법률안으로 간다면 개별 법률에 의해서 연구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타 면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논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반대하는 개념이 아니고 복지부와 저희가 아직까지 논의가 덜 되었으니 죄송하지만 시간을 주시면 상의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상의는 해 보시는데 그렇게 다른

대로 확대가 될 것 같다, 예타 면제 이런 것 다 고려하면 사실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복지부하고 전향적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안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아마 전체적으로 사실상 기재부, 복지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종합적으로 업무 영역이라든지 관장이라든지 가르마를 좀 타야 할 상황 같은데요, 심의관님.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안상열 예, 좀 더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잘 검토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96항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가 아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의원급은 신고제고 병원급은 허가제인데 이렇게 신고제를 일괄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또 수리기한도 명시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협의는 해 봤습니까, 대한의사협회하고?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이것은 지금 현재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신고하는 내용 중에 코로나 때 환기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환기시설을 추가해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돼 있는데 의료기관의 각종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설을 할 때도 그것을 확인하고 신고를 수리하기 때문에中间的 시설 요건과 이런 것들은 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김에 추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입법의 약간 불비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 없이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 63조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시정명령조차 듣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사실 행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벌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과태료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실질적으로 법적 부담도 완화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합리화하는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의협하고도 실무적으로 설명 관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의협에서는 과태료 규정을 만들면 의료기관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금 거꾸로 이해를 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게 좀 잘못된 이해입니다. 원래는 지금 현행 규정대로 따라가면 영업정지 아니면 500만 원 벌금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과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과태료 쪽으로 가도록 길을 열어 준 겁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이것 일단 한번 계류해 놔다가 충분히 대한의사협회하고, 오히려 지금 본인들한테 유리한 조항인데 잘못 이해를 해서 이렇게 과도한 제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협의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하시고 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 경찰청하고 지금 이견이 해소되었다고 그랬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협의가 됐습니다.

○박형수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마련했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당초에는 결격사유에 대해서 피성년후견인하고 2호는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중인 자, 3호가 마약중독자, 4호가 성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2호와 4호인 경우다라고 해 가지고 2호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거나 집행유예인 자고 4호는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자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병철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차관님, 103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 법안에 관해서 법무부에서도 초기에 반대 의견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정이 됐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법무부는 지난번에 했을 때 다 조정이 되고 아마 경찰청만 있는

결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정점식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85항, 88항, 92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각 단체의, 특히 의사협회 등의 반대 때문에 잠시 전체회의 계류하자고 그랬는데 해당 위원님들께 다음 주 초 정도에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각 단체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 법안 처리를 다 못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체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그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해소되면 다음 20일 본회의 전에 개최되는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103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무부는 부정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 이 부분 한 번만 더 계류를 시켜……

○위원장 김도읍 103항이요?

○정점식 위원 예.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간사님, 제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법무부에서 당초 의견 왔던 것은 피한정·성년후견인을 빼 달라는 거였었는데요. 경찰청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제1호는 제외가 됐습니다. 빠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빠져서 상임위에서 협의가 돼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정점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정해서 하는 결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리고 103항 25조의2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반사실 공표가 상대방에게 법익 침해 요소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주요내용 사항인 공표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러면 이것은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예,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시지요, 103항에 대해서.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예,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느 분이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입니다.

○유상범 위원 여기 안 중에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 낙인효과를 주는 침익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조항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결과 공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충분히 어떤 평가를 해서 만일 부적절하다면 그 부분을 행정적인 조치로서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 못 보셨구나.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아니,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조항이 2개였었습니다. 하나는 만 6세 미만으로 돼 있는 걸 9세 미만으로 장애아동을 늘리는 항이 있었고요.

○유상범 위원 예, 그것은 문제되는 게 아니군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문제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두 번째 21조 7항, 8항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평가 결과 공표인데요. 그때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긴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발달장애아동이고 또 아동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그런 내용을 소상히 알려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게 사실은 들어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발달장애아동들이면 사실 본인들에게 알려 준다는 것은 오히려 더 의미가 없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부모님들.

○유상범 위원 부모님들에게 알려 주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시설이 부적절하다면 행정적인 조치로 폐쇄하거나 발달장애아동을 다른 데로, 전원이라고 그러냐요 보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공표로까지 간다는 게 과연 그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드네요.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이렇게 공표를 하게 되면 결국은 당사자 사업

자는 그 이후에, 시설을 운영한 사람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시설을 운영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없어지기보다는 더 개선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 학대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모두 다 공표 조항이 있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저희도 이 법……

○유상범 위원 학대 사실을 공표하는 것과 시설의 적절성을 공표하는 건 좀 다른 문제기 때문에 질문하는데……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겁니다.

○유상범 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헌법상 비례성의 원칙에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가는 게 맞는지. 실질적으로 이렇다면 시설 자체를 차라리 폐쇄하거나 이렇게 하는 행정조치가 맞는 거지 공표 의미가 크게 있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희가 결과는 주로 A~D, F 등급으로 공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수 기관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포상도 부여하게 돼 있고 또 혹시나 미흡한 기관 같은 경우는 품질 관리의 교육 및 컨설팅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다 평가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예요.

○유상범 위원 평가는 다 하시겠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평가와 공표는 완전히 다른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해당 시설들에 대해서 반발이 되게 세지 않나요? 지자체 쪽에서 또 반발이 좀 있을 듯 한데……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상임위에서는 저희가, 크게 그것은 없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다른 일부 지자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견이……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큰 의견은 없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지자체는 이견이 없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점식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전문위원님께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104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쪽 있어서 이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결을 했는데 그와 같은 취지로 이 법안에 대해서도 수정이 돼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박동찬 마약류 관련한 법률이요?

○장동혁 위원 예.

○전문위원 박동찬 이것은……

○장동혁 위원 차관님은 제가 뭘 질문하는지 아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식약처장입니다.

식약처장 소관인데 이게 언론에 마약류 보도가 요즘 어떤 SNS로 마약을 구매하고 어떻게 지불하는지 너무 상세해서 모방 범죄가 일어날 우려가 큼니다. 그래서 이런 마약류 관련해서 보도할 때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보도 기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미 식약처에서 언론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6월부터 만들어서 이 권고기준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자살보도 권고 기준이라든가 아동학대 보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요, 그 보도 기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법안을 통과시킬 때 보도 기준에 관해서 법사위에서 수정해서 기준을 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이것이 수정됐는지 제가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동일하게 수정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저는 97번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위원장대리 정점식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소병철 위원입니다.

92항 관련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복지부차관님, 이게 지금 대통령 공약이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지역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 지역 공약으로.

그런데 공약을 정부에서 이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과기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안까지 만드셨네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런데도 왜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이 부분은 기관을 신설하게 되면 아무래도 초기에 건물이라든지

사람을 채용하는 초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에 대한 검토가……

○소병철 위원 그거야 기관 신설하면 당연히 들어가지요. 문제는 그 기관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복지부나 과기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기관이다. 그리고 대통령후보 시절에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공약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재부에서 이걸 반대하니까 좀 어이가 없어요. 기재부가 월권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부처 간에 협의가 충분치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월권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재정 당국은……

○소병철 위원 법사위까지 와 가지고,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뒤에 법사위에 왔는데 법사위까지 와서 발목을 잡는 기재부의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원으로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대통령 공약인데다가 두 부처가 이전까지 조정을 했는데도 계속 법사위까지 따라와 가지고 반대를 하면 그러면 차관님, 기재부에서 온당하게 한다고 하면 기재부 의견 따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쪽 읽어 보니까 장동혁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십분 공감하기 때문에, 자료 내용을 쪽 읽어 보니까 이렇게까지 수정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기재부가 대한민국 기재부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실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까?

아니, 차관님 기재부에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기재부 지적을 전혀 수용할 수 없다고 당당히 말을 해야지, 더군다나 기재부는 차관님이 나오신 것도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 나오셨잖아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공약을 반대하려고 절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걸 뭔가 잘못됐다. 2개 부처 차관님들이 합의를 하고 또 더군다나 현 정부 대통령 공약이고 그런데 기재부에서 계속 이렇게 발목을 잡으면 기재부가 대통령실보다 위고 복지부나 과기부보다 위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왜 차관님이, 내가 월권이라고 말했잖아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2개 부처가 우리 치의학 연구개발, 사실은 차관님도 나이 들어가시면 점점 치아 건강이 제일 중

요하잖아요. 필요한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계속 이렇게 발목을 잡으면 이게 합당한 거예요?

한번 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사위 심사 전에 부처 간에 완벽하게 의견을 조율해서 올려 드리는 것이 부처로서의 합당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부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만 재정 당국은 재정 당국으로서 또 그 임무에 맞게 이 기관의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과 협의 과정을 거쳐서 명확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병철 위원 차관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내놓은 것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병철 위원 그러면 이게 반대지 뭐예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다만 검토 과정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못 지은 상태인 것 같고요.

○소병철 위원 법사위까지 왔는데도 검토가 아직도 부족하다? 도대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반대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세심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최근에 이게 법안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예산 시준하고 맞물리는 바람에 실무적으로 검토하기가 좀 어려웠던 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소병철 위원 내가 여기 있어 보면 기재부가 왕왕 이런 일들이 있어서, 마침 이건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무슨 기재부 국가입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기재부가 대통령 위라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소병철 위원 매번 부처나 의원들 입법하면 발

목 잡는 게 기재부잖아요.

○위원장대리 정점식 안상열 심의관님, 조금 전에 우리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안상열 예.

○위원장대리 정점식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 전문위원 중에 어느 분이 검토하셨나?

여기에 보면 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입법 체계에서는 ‘적절한 조치’라는 규정 이렇게 기재하지 않거든요. 이것 수정이 된 건가요?

○전문위원 박동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입법례가 하나가 있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았습시다.

○유상범 위원 입법례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 입법례가 옳은 게 아닌데, 우리가 통상 규정을 보면 보통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통보한다’ 이렇게 하지 거기다 대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한다’ 이렇게 법문 규정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 규정 검토를 하셨습니까? 이런 식의 규정이 별로 없습시다.

○위원장대리 정점식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하고 해서 지적하신……

○전문위원 박동찬 조문을 조정을 좀 하겠습시다.

○유상범 위원 조정을 좀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에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한다’ 이런 식으로 명확히 해야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게 해서 마치 피수명 기관에 조치의 자율권이 주어지는 형태 이런 입법 규정은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계류해서 한번 안을 정리해서 조정을 하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니다.

○위원장대리 정점식 위원장한테 위임을 해 주신다면 그것은 간단한 자구 수정이니까 본회의 전까지 수정을 해서, 우리 가능하겠지요? 유상범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러면 그 조항 ‘적절한’을 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점식 그래서 그걸 실무자하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의논을 해서 자구 수정을 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장님, 한 말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던 103호 관련입니다. 법무부에서 사실은 25조의2 위반사실 공표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상임위 때는 얘기가 있었는데 법무부 의견이 뭐였냐 하면 세부 내용에 대한 고려가 없이 무조건 공표하는 것은 과도한 침해에 해당된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단서규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25조의2에 나와 있는 것이 되겠는데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된다’ 그런 것을 합의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점식 합의안이 전달이…… 저안이 우리 수정안에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이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점식 그러면 이 부분도, 103……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103호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점식 안건 103호도 이렇게 의결하도록 하지요.

대체토론할 위원님 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해 주십시오.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아까 장동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92호는 그러면 오늘 보류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정점식 잠시 전체회의에 보류하고 다음 전체회의나 그다음 전체회의까지 기재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이행 계획 등을 조금 구체화해서 서로 합의하면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병철 위원 저는 야당 위원으로서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해야 될 입장인데, 우리 여당 위원님들 기개가 어디 가셨어요? 대통령 공약을 제가 읽어 봐도 기재부의 의견이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이것 여야가 바뀐 것 같아요. 이것 통과를 시켜야지요.

○위원장대리 정점식 조금 전에 기재부에서도 안상열 심의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예산과 관련 단체 재정 계획 등을 조금 더 논의를 하겠다는 거고 이걸 반대를 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저희 당 위원들 어느 누가, 특히 장동혁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찬성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다만 기재부가 잠시만 한 일이 주 정도만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부처 간에 그렇게 협의할 시간을 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소병철 위원 누가 여당인지 야당인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점식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0항, 81항, 83항, 86항, 93항부터 95항까지, 98항, 105항, 108항, 10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제87항, 89항, 91항, 97항, 99항부터 제102항, 104항, 106항, 107항, 110항부터 112항까지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2항 및 90항, 제103항은 대체토론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제88항, 92항, 96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기일·박민수 차관님, 오유경 처장님, 지영미 청장님, 안상열 심의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4)

11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4)

1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6)

11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5)

11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1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1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4)

1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5)

(16시50분)

○위원장대리 정점식 의사일정 제113항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부터 제120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8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3항 지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를 정의하고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 실시 방법을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평가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실시 방법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고시하는 것으로 하고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를 실시한 자동차제작자를 지원하는 주체도 환경부장관에게서 국가로 변경하는 조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5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품별·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을 정한 개정안 제28조의7 중 제1호는 조합에 한정하는 사업이 부담금 징수 사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담금 징수 사업을 별도의 호에 분리하여 규정하는 등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8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육곰을 소유, 사육, 증식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벌칙을 부과하며 그 사육곰을 몰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34조의26에서는 사육곰 탈출 등의 사고로 피해를 발생시킨 곰 사육농가에 대해 피해액의 3배 한도에서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법원이 그 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개별법에만 도입되어 있는 제도로서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가 구조적으로 행하는 불법행위를 억지할 만한 특별한 필요에 한해 도입되고 있으므로 사육곰 탈출 사고 등이 해당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는 영역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14항, 116항, 117항, 119항, 120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정점식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임상준 환경부차관님, 이성희 고용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환경부차관님, 113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장동혁 위원 그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동으로 고시하는 걸로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장동혁 위원 전문위원님, 그 수정된 내용은 아직 반영은 안 돼 있는 거지요? 반영 다 돼 있

습니까?

○전문위원 김영일 수정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점식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118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그런데 여기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을 하셨네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유상범 위원 징벌적 손해배상은 법원행정처에서 지적하듯이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가 구조적인 유리함을 이용해서 불법행위를 자행할 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육농가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체계상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이걸 삭제해 해도 괜찮겠습니까?

○환경부차관 임상준 저희가 실질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때린다기보다는 지난번에 2022년하고 21년에 곰 탈출로 인해서 부부가 사망을 하는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다 선언적인 안전조치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노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넣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례로 제조물 책임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이 돼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징벌적 손해 그러니까 제조물 책임자 같은 경우에 그 자체가 제조자로서 굉장히 우월한 지위에 있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경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 자체는 제가 봐서는 징벌적 제도의 취지 자체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차라리 사전에 행정적 감독조치를 강화하고 형사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몰라도 손해배상, 이 체계에 맞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그 목적이 옳다고 할지라도 전체 우리 법체계에 이걸 도입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동의를 하시면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한 번 더 계류를 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법안을 재정리하시고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저희가 민간협의체를 통해서 동물단체, 전문가, 소유주 다 논의할 때는 이거 도입해도 어차피 2026년이면 곰 사육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법리상 좀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빼는

것도 동의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몇 조지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지?

○전문위원 김영일 34조의26입니다.

○유상범 위원 34조의26?

○전문위원 김영일 예.

○유상범 위원 그것만 삭제하면,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점식 지금 현장에서 삭제한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고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소병철 위원 이것 말씀 좀 드릴게요.

소병철 위원입니다.

유상범 위원님 말씀 십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교육지책으로 이 조항을 넣으신 것 같아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러니까 애완견이든 아니면 야생동물이든 또는 집에서 키우는 또는 농장에서 키우는 동물로 인한 피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소병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이걸 집어넣은 것 같아서…… 그렇지만 우리 유상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지금 삭제를 하는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을 법사위에서 그냥 덜컥 삭제하는 건 저희가 좀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한 기일 보류하고……

○위원장대리 정점식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소병철 위원 해당 상임위 간사하고 저희도 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점식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120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일단 여기에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건데요. 이 처벌 규정이 적절한지 형량 등에 대해서 법무부나 대법원에 의견 조치는 해 보셨나요?

전문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영일 저희 쪽에 특별히 의견이 온 건 없습니다.

○박형수 위원 없고 우리도 조회한 건 없지요?

○전문위원 김영일 조치는 따로 하지 않았습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희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점식 예.

○고용노동부차관 이성희 고평법의 조항을 저희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춰서 처벌 조항을 조금 상향 조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벌칙 조항 37조 3항에서 신고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 벌칙 조항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관계 법률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고객의 폭언 등 피해에 대한 응대 근로자의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유사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벌칙 조항을 상향 조정하기로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39조 3항 1의8에 사업주 조치 의무를 강화한 것도 지금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 요청 시 근무 장소 변경 시 적절한 조치 의무 관련해서도 과태료 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상향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태료 사안인 것을 형벌 사안으로 올리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들의 기업 의지가 위축될 것이고 경영에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연합회, 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연합회 모든 단체들에서 이렇게 하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단지 또는 기업 경영에 부담이 가중된단지 이런 이유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들 다른 의견들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 사안을 형벌 사항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법무부나 대법원의 의견 조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희 위원님, 법무부에는 의견 조회를 했었고요. 이견이 없음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형수 위원 뭐라고요? ‘이견 없음’으로 왔었다고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희 예.

○박형수 위원 대법원은 안 했고?

○고용노동부차관 이성희 대법원은 관련 저기는 없었고요. 법무부에 의견 조회를 한 바 있었습니다.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2소위에 회부를 해서 관련 단체 의견도 충분히 들어 보고 대법원 의견도 조회해 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점식 지금 말씀하신 사안 자체가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희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위원장대리 정점식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사업주를 이전에는 과태료 처분했는데 지금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희 예, 형사처벌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똑같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점식 알겠습니다.

차관님, 이렇게 하시지요.

곧 전체회의가 또 있으니까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우리 박형수 위원님께도 한 열흘 사이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걸 하시지요. 경제단체, 사업주 단체의 의견도 좀 듣고 그 사항에 대해서 박형수 위원께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대리 정점식 송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기현 위원 대기환경보전법 보니까 수정안이 환경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똑같은 내용을 같이 고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부분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연비 부분은 산업부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국토부는 전체적인 사후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산업부, 국토부하고 같이 해서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의 평가를 공동으로 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방법론

이나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지를.

○송기현 위원 아직은 정리가 된 게 없이 그 부분도……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앞으로 한 3년 이내에 그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지요.

○송기현 위원 조사하는 게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양쪽에서 똑같은 걸 조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또 누가 주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의견 조율하는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자세히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법을 이렇게만 해 놓으면 이중으로 될 수도 있고 떠넘기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점 잘 조율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차관 임상준 유념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점식 더 이상 대체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4항, 116항, 117항, 11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3항, 115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8항, 120항 법률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임상준·이성희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2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6)

12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2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125.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126.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12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8606)
- 12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7)
- 129.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8)
- 1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13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제출)
- 13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제출)
- 13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17시05분)

○위원장대리 정점식 의사일정 제12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33항 중소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13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만 제127항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박동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3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
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전문기술인력 발굴·
육성 지원,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교육공무원
등의 예외적 휴직 허용 등 관련 지원 체계를 마
련하는 내용으로 일부 체계·자구 수정이 필요하
다고 보았습니다.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편 법무부는 개정안 제28조제2항과 관련하여

엄격한 요건하에 상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중
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기업 활
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대하는 것은 현행법 체
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안 제28조제2항에 단서
를 추가하여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특례 조항의 확대가 배제된다는 점을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산
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수용하여 법무부와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일정 125항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은
전기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하여 전기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
는 것으로 전기의 날 제정·운영, 전기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전기산업 지원·육성 체계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
금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편리한 사용을 위하
여 체계적인 기술기준을 수립·관리·운영하도록
하면서 사업의 위탁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살려 위탁 근거
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
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14조제1항에 관하여
개별법 차원에서 세제지원의 근거를 규정하는 것
은 비과세·감면을 통합 관리하려는 조세특례제
한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되고 개별법에 세제지원
근거규정을 두어도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는
세제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안 제12조에 관하여 개별 법령에 따른 다른
분야 기술과 서비스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기산업과의 융합 촉진을 이유로 다른 분야 기
술과 서비스로 확대 해석·적용되어 업역 침해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계부처와의 합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30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의 예치된 금액에 관한 반환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
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탁기업이 입

중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액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의 예치금에 관한 반환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22조제7항에 관하여 현행 상생결제 시스템하에서도 하위 수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은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예치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협력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만 제약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25조의2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후 이를 정정하여 의견이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률의 제명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폐지하며 벤처기업 지원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관에 필수 사항을 기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벤처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른 주식 교부를 위해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주주총회 승인 등을 요하지 않도록 하여 주주들이 이익을 해하거나 계약 남용의 우려가 존재하고 현행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바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과 주식매수선택권 사이에 부여 요건이 서로 다른 경우 규제차익이 발생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가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주주총회를 통한 사후승인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3항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을 중소기업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현재보다 상세한 과세정보와 고용정보 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정보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하여 관세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받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법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상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과세정보에 대해서도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관세청 및 국세청과 각각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21항, 122항, 124항, 129항, 132항 등 5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126항, 128항 등 2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위원장 김도읍 박동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장영진 산업부1차관님, 강경성 2차관님, 오기웅 중기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전문위원님, 확인할 게 있습니다.

131항, 133항은 부처의 이견이 있었는데 그게 수정의견이 나왔는데 그것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지금 보고서에? 131항하고 133항에……

○전문위원 박동찬 저희가 따로 자료를 지금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서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자료로 배부하였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면 그것 반영해서 지금 해야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박동찬 예.

○장동혁 위원 131항, 133항은 수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122항에 대해서 차관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해당 토지가 이미 일반 공중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시·도지사 허가 받아서 가스배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강경성 예.

○장동혁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토지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이나 이런 배타적 권한이 완전히 박탈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제한되는 게 아닌 경우들도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봐야 한다’ 그러면 이게 공중에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여전히, 사용·수익권이나 다른 권리가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도지사 허가 받아서 마음대로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저는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좀 더 법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법무부나 법원 행정처에도 저는 이 법적 의견에 대해서 한번 조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강경성 산업부2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서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하고 또 보급을 희망하는 지역에 가속화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여러 법리적으로 견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 논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예.

○위원장 김도읍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126번 한국석유공사법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2차관 소관이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강경성 예, 2차관 소관입니다.

○전주혜 위원 한국석유공사가 1978년에 설립이 됐고 이것은 이름 그대로 석유 개발과 관련한 것 아니겠어요? 석유자원의 개발 그리고 석유 비축 이런 석유 관련 사업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공사가 설립이 됐지 않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강경성 예.

○전주혜 위원 그런데 이 개정안을 보면 이 사업 범위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게 석유와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강경성 석유공사는 석유 비축 또 동해 가스전 개발의 경험이 풍부하고요, CCUS라든지 이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공사가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사해서 목적과 사업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사업 범위에도 탄소의 포집, 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강경성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지금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고 또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될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충분히 그 법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석유공사의 기존 성격과는 사실 매칭이 잘 안 되는 면이 좀 있어서 78년에 생긴 이 석유공사의, 사실 새로운 제2기 석유공사로 할 정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법 개정의 취지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강경성 지금 탄소중립 글로벌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해야 되고요, 석유공사가 석유의 활용에 대한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활용하면서 에너지 전환의 역할에 기여할 필요가 있고 지금 여기 있는 CCUS라든지 그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석유하고 프로세스나 성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석유공사의 기존의 경험과 어떤 그런 역할들을 이제부터 조금씩 전환시키면서 경험을 확보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전환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주혜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어떤 검토를……

○전주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질적인 부분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조금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유상범 위원 제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관련해서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차관님, 탄소 저감과 관련해서 석유공사법에서 왜 규율을 하나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사실은 현재 우리가 탄소와 관련해서는 석유를 수입해서 가공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탄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 수소 같은 경우에 거기서 포집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강경성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거지요.

○유상범 위원 예,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거기서 수소를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게 결국은 탄소 저감이나 모든 게 지금 석유와 관련해서, 석유산업과 관련해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이 관련 규정을 여기 포함시키는 거지요, 개정안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강경성 예.

석유와 관련도 있고요. 이 암모니아 업무를 추가했는데 이것은 수소를 크래킹 하면 암모니아가 되고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혜 위원님은 수소화합물 관련 사업을 석유공사법에 왜 넣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석유의 수출과 관련해서 이게 유발되는 산업인 것은 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강경성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 부분 설명을 주시면 명확한데 그 부분 설명이 잘 안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산업의 발전은 석유 추출물을 재가공하거나 화학적으로 포집해서 분해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산업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강경성 위원님 말씀한 석유를 비축하거나 석유를 정제할 때도 나오지만 암모니아와, 암모니아가 수소화합물이거든요. 그것은 암모니아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석유를 비축하거나 또는 석유를 정제하거나 하는 과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석유공사가 초기에 탄소중립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이런 역할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유상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123항과 관련해서는 우리 전문위원 보고를 보니까 법무부 등의 수정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합의안을 마련하고 동의를 하신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장영진 예, 이미 다 합의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125항과 관련해서도 기재부, 행안부, 통일부 등과의 합의안이 마련된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강경성 예, 합의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 합의안을 토대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읍 전주혜 위원님, 한국석유공사법은 어떻게 할까요?

○전주혜 위원 1분만 좀 주시면……

○위원장 김도읍 예.

○전주혜 위원 새로운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석유공사가 충분한 역할을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좀, 조직도 더 신속하게 준비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강경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6항, 127항, 12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21항, 124항, 129항, 130항, 132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23항, 125항, 131항, 133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22항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4.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회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0)
13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0)
13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023)
13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4)
13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3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4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29)
1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42.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8)
143.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5)
144.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00)
14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46.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47.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48.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4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4)

150.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5)
15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7)
152.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5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4)
15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1)
15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0)
15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5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58.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7시22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134항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부터 158항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까지 25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의사일정 제134항부터 158항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5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사일정 제140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어업경영체 및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요금 또는 유틸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39항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토지이용행위를 한 경우 등에 그 행위자 이외에 해당 농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도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

용으로 이러한 제제가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41항과 144항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6항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 제46조가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위원회에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사경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7항은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이하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8항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광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정부의 관광진흥 기본계획과 불일치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2항과 153항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6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이 국가와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간주 특례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산림조합법에 대한 중소기업 간주 특례는 신설 당시 5년 조건부로 한시 허용된 것으로 해당 조항의 일몰이 타당하며 산림조합중앙회를 중소기업 간주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4항 등 5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36항 등 9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한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법안 심사를 위해 한훈 농식품부차관님, 박성훈 해수부차관님, 조재호 농진청장님, 남성현 산림청장님, 김용진 해경청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또한 제148항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과 156항 산림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님,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오늘 법안을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중간에 약간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90항과 관련해서는 아까 전문위원이 수정하기로 의결된 조항이 개정안이 아니라 현행법 35조의4제1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안이 69조 1항 3호의2를 개정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조의4제1항을 35조의4제5항으로, 이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복지부와 의원실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위원장님께 일임을 했는데 조항을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다시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전문위원 누구 담당이십니까?

○전문위원 박동찬 예, 제가 담당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박동찬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따로 의결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박동찬 예, 아까 그 위임을……

○유상범 위원 위임은 했는데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알려 드린 거고요.

○위원장 김도읍 감사합니다.

○유상범 위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의사일정 130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수정의견대로 수정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검토보고서에서는 법무부 수정의견이 반영이 됐는데 주서본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서본 반영을 해서 법무부 수정의견이 주서본에도 반영이 되도록 하고 이 의견을 포함시켜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감사합니다.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잠시만요.

139항 농지법 관련해서 차관님께 좀 여쭙볼게요.

이게 법원행정처가 이견이 있다 지금 이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혹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상임위 심사 시에 좀 받아 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한훈 상임위 심사할 때는 그런 의견이 없었고요, 법사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내용은 전달받았고요.

○전주혜 위원 어떤 내용으로 전달받으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한훈 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피상속인, 양도인에 대해서도 승계되는 걸로 지금 규정이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한훈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했습니다.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만약에 그런데……

○전주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정안 42조의3을 보면 양도인을 대상으로 발령을, 원상회복 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망을 한다거나 아무튼 양도를 했을 때 상속인이나 양수인에게도 원상회복이나 시정명령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처분을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한훈 예,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피해가 가는 것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한훈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타 입법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법 사례에 따라서 저희가 했는데 이 부분은 그게 그런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상속인, 양수인 등에게 다시 시정명령을 내리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수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법원행정처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수용을 하면 아예 삭제 의견이시라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한훈 예, 삭제합니다. 삭제하는 것 수용합니다.

○전주혜 위원 42조의3을 아예 삭제하자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한훈 예, 수용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외에는 저는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삭제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전문위원님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144항, 147항, 152항은 부처 간 이견이 있어서, 부처 간 의견이 일치돼서 수정된 내용이 있는데 지금 그 검토보고서와 주서본에 수정의견이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전문위원 한석현 예, 보고서에 수정의견 마련하였다는 부분들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148항 관련해서, 해수부 관계자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차관 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게 지금 문체부에서 반대를 한다고 돼 있는데 관광레저의 종합적인 국가 계획은 문체부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해양수산부차관 박성훈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계획이라는 성격에 따라서 의미 부여가 다를 수가 있는데요, 현재 해양레저관광이 전체 세계관광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또 기존에 있던 유사한 법 사례를 보더라도 기본법이 있고 또 관련되는 법을 따로 떼서 타 부처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현재 규정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저희가 새롭게 내용을 담는 게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해수부 사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 그러면 산림청의 경우도 따로 산림관광, 레저관광 이런 종합계획을 거기서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데 그렇게 부처별로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게 국가계획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체부 관계자 나오셨지요?

○해양수산부차관 박성훈 제가 말씀을 좀 더 드

려도 될까요? 아니면……

○**김영배 위원**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문체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 박종택입니다.

이 해양레저관광법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저희 문체부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합의를 하고 좀 더 논의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그전에 대통령실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이게 종합계획을, 컨트롤타워가 있다면 정부는 아무래도 대통령실 그리고 또 총리실, 국조실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부처 간의 기능을 다 법을 두게 되면 사실은 이게 나중에 잘 못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관련된 업무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정부기관들 내에서의 종합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정부 간에 좀 더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 드립니다. 그래서 좀 계류했다가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형수 위원** 제가 말씀……

○**위원장 김도읍**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제가 낸 법률이라서 제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김영배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네요.

일단 해수부 입장은 나중에 들어 보고, 어디서 나오신 분입니까?

○**위원장 김도읍** 문체부 관광정책국장님.

○**박형수 위원** 문체부 관광정책국장님!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박종택** 예, 관광정책국장입니다.

○**박형수 위원** 지금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해 왔잖아요.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한 번도 안 갔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박종택** 이 법안에 대해서 국조실에서 우리 부처로 해서 조정한 별도의 그런 회의는 없었고……

○**박형수 위원** 아니 잠깐만, 해수부 입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박성훈** 국무조정실에서 관계 부처와 다 조율을 마쳤습니다.

○**박형수 위원** 조정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문

체부에서 거기 한 번도 안 갔다고 그래요. 가지 않으면서 ‘우리는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와 가지고 ‘시간을 더 달라,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앞뒤가 영 안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관광기본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세부적인 해양레저에 관한 법률은 필요 없다 이런 취지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라면 기본적으로 형법이 있는데 특별법은 왜 필요하고 특가법은 왜 필요합니까? 그런 법은 다 하나도 없어야지요, 기본 형법이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있으면 거기서 세부적으로 항목을 달리한다든지 또는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른 법 충분히 다 할 수 있지요.

거기 지금 소관인 관광진흥법 있잖아요. 그런데 문체부 소관인 문화예술진흥법 있지요? 문화예술진흥법이 기본법이잖아요. 그런데 국악진흥법도 있고 독서진흥법도 있고 여러 법률들 다 있잖아요. 그거는 왜 지금까지 만들 때 그냥 놔 뒀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문체부 입장은 관광기본법이 있으니까 다른 법률 만들면 안 된다, 그건 법체계에 어긋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법률을 발의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 법체제도 모르면서 이렇게 발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좋습니다. 그렇다고 침시다. 민주당의 주철현 의원님도 저하고 비슷한 법률을 발의하셨는데 그 양반도 법률체제도 모르고 이 법률을 발의한 겁니까? 저는 지금 앞뒤가……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가 전체적인 계획, 관광기본계획과 해양레저법이 생겼을 때 그 계획이 안 맞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법률에 그걸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법률 검토해 봤어요? 전체 기본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 조항까지도 다 마련해 뒀는데.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박종택**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 법안에 반대냐, 찬성이나 이 논의보다도 저희가 K-휴양 관광벨트라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다음 주에 발표를 합니다. 이처럼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해양관광레저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좀 더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박형수 위원** 사업 발표하는 거하고 법률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김영배 위원 직결되지요.

○박형수 위원 뭐가 직결돼?

○김영배 위원 법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박형수 위원 에헤, 법도 없는데 지금 한다잖아.

○송기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도읍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해수부차관님, 제정법 보니까 6조에 종합계획이 관광기본법에 따른 관광진흥계획과 조화를 이뤄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해양수산부차관 박성훈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한편으로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우선 이 법에 따르면 해양레저관광에 관련된 계획이 서면 그거는 관광기본법이나 다른 데서 만들어진 관광계획보다도 우선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차관 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면 우선 문체부하고 조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법 내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기본법하고 이게 특별한 부분인데 어떤 것이 우선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의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단순히 협의해서 해양관광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고.

이 조항에 보면 조화를 이뤄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해수부가 임의로 해양관광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지요.

○해양수산부차관 박성훈 임의로는 아니고요. 국조실에서 저희가 법체계상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송기현 위원 체계는 다음 문제고 실제 이 법을 집행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행을 할 때가 되면 해수부가 다른 부처하고 협의하지 않고 일단 관광기본법에 따른 계획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렇게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해수부가 독자적으로 하게 돼서 그 계획 내용이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관광기본법에 따른 관광진흥계획과 상치될 가능성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더 문체부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 보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체부에서 오신 누구시라고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박종택 관광정책

국장입니다.

○송기현 위원 문체부에서는 왜 국무조정실에서 하는데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곳을 안 갔어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박종택 아니, 의견을 제출을 했고, 충분히 저희가 의견을 제출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줄 알고 있었고 상임위 통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늦게 인지를 했었습니다.

○송기현 위원 정보를 잘 파악을 하셔서 가지고 상임위에 논의되는 걸 잘 찾고 농해수위에서 소위가 열리면 문체부도 가서 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정부 때도 법사위에서 매번 정부 측에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국회에 오기 전에 부처 간 협의가 돼서 와야지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협의 안 되고 법사위에 와 가지고 서로 간에 이견을 제기하고 오면 정부부처가 하나로 움직이지 않고 각각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난 정부 때도 그 얘기 맨날 했어요, 법사위에 있으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똑같이.

해수부, 문체부가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안이 있으면 농해수위에서 논의가 되면 가서 의견을 얘기해야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고 왔다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가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체부도 해양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수집도 하고 그럴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박종택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이 법에 보면 마찬가지로 해수부도 관련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정보 수집도 다 하게 돼 있어서 이게 중복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점은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하는데 이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실제로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건 2소위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형수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박형수 위원님.

○소병철 위원 아니……

○위원장 김도읍 소병철 간사님 먼저 하시고……

○박형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소병철 위원 예.

소병철 위원입니다.

저도 남해안 관광에 대한 특별법도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우리 정부부처나 위원님들이 다 해양레저관광을 진흥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결국 법사위에서는 법의 체계 문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해양레저가 앞에 있기는 하지만 해양레저도 결국은 관광인데 이것을 해수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한다? 두 부처가 이렇게 공조를 하고 있는 것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국장님, 지금 해수부에서 해양레저에 대한 진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광을 책임지는 부서 쪽에서는 당연히 해양레저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해서 관광계획을 세운다든지 할 때 해수부의 의견을 좀 들어 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박종택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렇지요?

아마 지금 국조실에서 논의를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의견을 냈는데도 안 받아들여지니까 더 이상, 벽에 부딪혔던 것 같고. 아까 말씀 중에 농해수위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잘 인지를 못 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박종택 소관 상임위에서 소위 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소병철 위원 얻지 못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박종택 예.

○소병철 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정말 큰 흠결이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박종택 저희가 좀 인지를 하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 물론 정보력이 부재했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해당 소위에서 논의할 때 당연히 문화체육관광부, 특히 국장님처럼 주무 책임자를 연락을 해서 소위에 나왔어야 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박성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요.

○소병철 위원 가만있으세요.

○해양수산부차관 박성훈 팩트가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가만있으세요.

아니, 아까부터 제가 보니까 제 질문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할 때 자꾸 지금…… 누구시

지요? 차관님이세요?

○해양수산부차관 박성훈 예, 차관입니다.

○소병철 위원 왜 그렇게 하세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포기하고 의견을 안 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내가 차관님한테 질문하는 것도 아닌데 왜 끼어들니까?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얻어서 해야 돼요!

아니, 위원들도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얻는데 정부에서 나온 정부위원이 말 속에 끼어들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차관님 때문에 지금 내 시간을 많이 낭비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소위 할 때 왜 연락이 안 된 거예요? 문체부가 스스로 정보 수집을 해 가지고 간다는 것 바람직스럽지 않은 면도 있어요. 해당 소위에서 당연히 관광이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를 좀 나오시라 해 가지고 의견을 들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락이 안 왔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 박종택 이 부분은 저희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관광을 진흥하는 것은 당연히 찬성하고 저희들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법 제정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해양수산부와 추후 더 논의해서 합리적인 법체계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차관님, 질문 안 하는데 그렇게 끼어들어 가지고 하시려면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달라고 하세요.

○해양수산부차관 박성훈 예.

○소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해수부차관님, 제가 이제 기회를 드릴게요.

이 법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문체부는 이 법의 제정 자체를 반대했었지요?

○해양수산부차관 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출석을 안 한 걸 가지고 마치 무슨 통보를 못 받아서 출석을 했느니 안 했느니. 말이 됩니까, 지금? 해당 부처에서…… 그러면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아, 이게 어느 부처와 관련돼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먼저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진행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부처와 관련

되는 게 있으면 당연히 가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미 법 자체에 대해 제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까지도 표명해 났는데 그거 어디다가 핑계를 대는 겁니까, 지금?

이게 좀 옆으로 갔습시다마는 해수부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박성훈** 방금 문체부 담당 국장의 발언 중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바로잡으려고 하고요. 당연히 저희가 통보를 했고 또 불참을 하겠다는 그런 연락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때도 의견 제출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논의가 없었다든지 그리고 연락이 가지 않았다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박형수 위원** 하여튼 해양레저관광법 이게 왜 필요하나면 지금 일반적인 관광과 해양레저관광은 굉장히 다릅니다.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중에다가 무슨 수중공원 같은 걸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해양장비 같은 걸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해양관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관광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 해수부가 전문적인 기구나 이런 걸 이용하는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체부는 지금 ‘관광기본법이 있으니까 안 된다’, 무조건 반대하면서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하는 데도 응하지도 않고.

문체부에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걸, 이 법을 자꾸 뒤로 미뤄 가지고 상정이 안 되게 또는 통과가 안 되게 이렇게 작전 쓰신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법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또는 어디서든지 조정을 할 때 문체부 반드시 거기 출석을 하고 그리고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안을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절충된 안을.

그리고 아까 송기현 위원님이 2소위 회부라고 말씀하시던데 전체회의에 한번 계류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송기현 위원님, 어떠십니까?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송기현 위원** 김영배 위원께서 2소위 의견을 내셔서……

○**박형수 위원** 누가요?

○**송기현 위원** 김영배 위원이요.

○**위원장 김도읍**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 보통 때는 박형수 위원님 아주 참 논리정연하셔서 항상 경청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치열하게 다툼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대개 전체회의 계류해 놓는 것은 이제 다음번 회의에서 한 번쯤 정리가 될 때 보통 전체회의에 계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음번에도 위원들끼리도 의견이 갈리고 부처 간에도 치열해서 조금 이걸 전체회의에 계류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2소위로 좀 해서 집중 논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 놓고 다음 때까지 조정 안 되면 그때……

○**위원장 김도읍** 자, 제가 정리할게요.

2소위에 회부하자는 위원님들 의견도 계시고 한테 지금 해수부하고 문체부하고 이렇게 같은 정부하에서 논쟁을 하는 걸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국무조정실 조정이 있었다고 하니 간사님, 제가 전문위원에게 국무조정실로부터 자초지종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조정이 있었다는 것은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고 해서 국무조정실까지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고 한석현 전문위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 보고 그때 필요하다면 국무조정실 관계자도 법안 심사 회의 때 참석을 시키고 해서 한번 들어 보고 그때 가서 2소위에 회부할지 아니면 통과를 시킬지, 전체회의 계류할지 그렇게 결정하시지요, 바로 2소위에 가는 것보다는.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신데요. 2소위 위원장님이 마침 정점식 간사님이신데요. 저도 오늘 사실 여러 발언을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많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국조실에서의 의견 확인도 물론 필요합니다 마는 위원들끼리 집중적인 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소위로 회부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그것을 다음 전체회의 때 국조실 이야기도 들어 보고, 지금 문체부

는 국조실 조정할 때 참여를 했다 또 안 왔다, 불참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하니까 자초지종 경위를 한번 들어 봅시다, 국조실로부터.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판단을 하시지요.

○소병철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부처 간에 이견이 어디까지 과연 있었는가 부분도 있는 것은 맞습디마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법체계상 문제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조실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점식 간사님이 2소위 위원장님이시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하시면 전체회의 계류해 놓은 것하고 똑같은 효과고, 저희가 다음번 법사위 전에 2소위를 하기로 이미 일정이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예.

○정점식 위원 지금 잠정적으로 합의한 게 18일 오후에 2소위를 하기로 합의를 해 났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박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오늘이 7일이니까 18일이면 부처 간 서로 성의가 있다면 충분히 협의를 하고 조정하고 또 권리 위에 잠자고 있으면 그것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고 각자가 2소위에 문체부하고 해수부하고 같이 해서 18일, 만일 박형수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2소위로 회부해서 18일 날 논의하는 데 소병철 간사님께서 동의를 하시면……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뜻을 받들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영배 위원 2소위 일정은 18일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정점식 위원 잠정적으로 확정을 해 났습니다, 2소위를 한번 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도읍 박형수 위원님이 동의 안 하시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박형수 위원 그러시지요. 2소위에서 논의하시지요.

○정점식 위원 제가 그러면 발언권을 얻은 김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정점식 위원 저는 135항, 140항, 146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차관님, 135항과 140항은 거의 조문이 같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한훈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 일부 지원을 하는 건데, 이 조항 자체가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어업경영체 등에 대한 전기요금, 유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게 핵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140항도 역시 마찬가지고.

일단 기재부에서는 이렇게 그동안 유가 등도 하락하고 이런 등의 이유로 국가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지원이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어업 분야까지 필요하다는 것은 저 스스로도 우리가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제한 규정을 뒀었는데 기재부가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전체회의에서 기재부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논의를 했으면 해서 저는 135항과 140항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해수부차관님, 146항 이게 여러 규정이 있지만 결국은 어선원안전감독관이 공무원 신분입니까, 아니면……

○해양수산부차관 박성훈 선주가 될 수 있고요.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소위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하는 특사경은 민간인이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인 상태고 그리고 특사경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직무범위를 정하는 것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사경법에서 하는데 이것은 개별 법률에서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은 지금까지 제가 본 바가 없습니다. 아마 입법 과정에서 약간은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농해수위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혹시 특사경 관련 규정만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해수부는 동의를 하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 박성훈 예, 저희가 46조를 삭제하더라도 타 조항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요. 사전에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하는 의견을 주신다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래서 특사정 관련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을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156항 산림조합법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기 지금 임직원 등의 적립금·잉여금 관리의 무 위반 시에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처벌인지 어딘지에 대해, 또 다른 법률에 이런 규정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법무부나 대법원에 의견 조회해 보셨나요? 전문위원, 그런 것 없었지요?

○전문위원 한석현 의견 조회는 안 했습니다.

○박형수 위원 상임위 과정에서 혹시 그런 의견 조회 있었습니까?

○산림청장 남성현 그것은 저희가 권익위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런데 법무부나 법원행정처에 조회는 안 하셨지요?

○산림청장 남성현 예, 의견은 없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리고 특례에서 5년에서 10년으로 유효기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부에서 이견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조정이 됐습니까?

○산림청장 남성현 아직 조정은 안 됐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회의에 한번 계류를 해서 다음에 다시 논의하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36항, 137항, 142항, 143항, 145항, 149항부터 151항까지, 15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34항, 138항, 141항, 144항, 147항, 152항부터 155항 및 158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9항 및 146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35항, 140항, 156항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48항은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59.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60.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6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62.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 (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6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7시59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159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대안)부터 163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대안)까지 5건의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의사일정 제159항부터 제163항까지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3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법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9항 등 3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160항은 체계 및 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한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김선호 국방부차관님, 이기식 병무청장님, 엄동환 방사청장님, 안종철 5·18조사위 부위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162항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

활동에 관한 법률안 관련돼서요, 차관님.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유상범 위원 행안부에서 이견이 있어 가지고 국방부랑 아마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제9조 지뢰대응활동위원회에 대해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이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고 국방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 의견이 온 것이 상임위의결 때는 행안부에서 그런 의견 제시가 없었습니다, 부처 의견이. 전체회의에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현재 그런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시겠네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만약에 지금 한다면 행안부에서 의견을 썼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하고 함께 관련해서 의견을 나눌 생각입니다.

○유상범 위원 행안부에서 제10조 지뢰대응활동센터 부분에 대한 직제에 대해서도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직제를 별도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 의견 조치가 늦게 돼서 별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다음에 행안부와 의견조정을 하고 나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자료가 조금 전에 왔습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직제에 관해서 논의가 되다 보니까 행안부가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회의 때 하실 거니까.

의사일정 제16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9항, 161항, 163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범계 위원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시지요?

○박범계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2항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6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65.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123937)

166.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469)

16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6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6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123200)

(18시03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164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부터 제169항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까지 6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의사일정 제164항부터 169항까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4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긴급구호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유사 입법례들이 특정 직무 종사자의 자격을 법률에 규정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직무 분야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안전진단과 관련성이 있는 건설,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해외긴급구호대에 포함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8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65항 등 4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장호진 외교부1차관님, 문승현 통일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저희가 전달받기로는 통일부의 이견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해소됐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장호진 예?

○전주혜 위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통일부의 이견이 있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혹시 그 부분은 해소가 됐나요?

○외교부제1차관 장호진 예, 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다 해소가 됐고요. 저희도 다 동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65항부터 167항 및 16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4항 및 제168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70.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6)

17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1)

17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8시05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170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부터 제172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까지 3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의사일정 제170항부터 172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0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첫째, 제10조에서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년의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은 경제안보품목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심의와 더불어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위원회의 위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복 절차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어서 동의 요건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제34조에서는 위기품목 중 긴급수급조절 물자를 지정하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별도의 지정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긴급수급조절물자 지정 시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1항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금 보고드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 지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관련 조문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72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혁신제품의 발굴, 해외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7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혁신제품 지원을 받은 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의 규율 범위가 일반적인 해외시장인 아닌 조달시장인 점을 고려하여 해당 문구를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법안 심사를 위해 김병환 기재부1차관님, 김윤상 조달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 171항 관련해서는 수정한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수정 의결해야 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예, 수정안이 지금 주서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170항부터 172항까지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소병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간사끼리 협의하다가 지금 발언할 기회를……

의사일정 170항 공급망 관련해 가지고 누가 나와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기재부1차관입니다.

○소병철 위원 차관님, 아침에 우리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요소수 대란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달 전에 중국이 요소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 있을 때 정부에서는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낙관론적인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때는 비료용 관련해서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확인을 했더니 중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수출을 막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언론에 설명을 한 적은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사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대외적인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에서 이런 발표를 했을 때 정부에서 안이하게 대처할 게 아니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됐는데 지금 와 가지고 허둥지둥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해도……

중국 측에 확인을 한 겁니까, 그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보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사실이 아닌 게 확인이 됐고 그 당시에는 원활히 공급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런데 지금 중국이 갑자기 돌변한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중국이 지금 국내의 요소 수급이 좀 부족한 상황, 특히 인도 쪽에서 중국 요소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중국 쪽에서 조금 급하게 뭔가 수출 부분에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 예전에 요소수 사태 있었을 때 중국 의존도하고 지금 의존도하고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정확한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당시의 수치보다 작년 기준으로 조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 글썄, 그 통계를 차관님이 알고도 답변을 회피하시는 건데 지금 거의 90% 의존도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 지금 차관님도 정확한 수치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이 일부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지요, 이게. 아니, 과거에 요소수 사태가 났는데 대외 의존도가 낮아졌어야 되는데 90%가 되어 버렸다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정부가 과연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병철 위원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요소가 기본적으로 중국 게 쌉니다. 싸고 품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급하는 건 기본적으로 기업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 있어 가지고는 기업의 수지타산을 따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수출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기업들의 그쪽 비중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두 가지……

○소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요소수가 지금 시중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건 알고 계시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오프라인에서 파는 것은 별 영향이 아직까지는 없고요. 온라인상으로는 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 아니지요. 주유소에서 파는 것도 거의 3000원 이상 가격이 상승했는데 지금 차관님이

변화가 없다고 하니까 도대체 제대로 실상을 알고 계시는 건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매일매일 모니터링하고 있고 판매하는 처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는 상황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병철 위원 공급망법에 대해서는 지금 마치 공급망법을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기재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선 대외의존도가 과거 때보다 비율이 낮아졌어야 했는데 90%까지 올라간 것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뭐라고 지금 변명을 하시든 국민 입장에서 그게 수궁이 안 돼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말씀을 드리면 기업들이 결국은 썬 데서 조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 다시 물리는 건데 이 공급망기본법이 마련되면 기업들이 조금은 비싸지만 다변화하는 쪽에서 조달을 할 때 그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수단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어제 양당 정책위의장하고 원내수석부대표 해서 2+2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각 당이 중점 추진하는 법안 10개씩 가지고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게 당장 공급망법에 대해서 지금 정부 측에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방금 차관님 답변을 들어도 사실 통계도 제대로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망법을 다음 주에 우리 여야가 논의할 때 요소수 사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한 기일만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켜 주십사 이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간사님, 야당에서 정부를 책망하고 나무라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법을 통해서 잘해 보겠다고 하면 법은 통과시켜 주시고 중장기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달리 또 야당에서 질타를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요소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소병철 위원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도읍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통과시키지요.

○소병철 위원 아니, 이것 지금 도움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당장 지금 시급한 이 요소수 문제 뿐만 아니라 공급망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대책이 납득할 수 없는 대책이 나오니까 당장.....

○위원장 김도읍 어떤 부분이 납득이 안 됩니까?

○소병철 위원 방금 차관께서 답변했지만 통계도 엉터리 통계를 이야기하고 시장의 상황도 지금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이 많이 걸리면 위원장님 말씀 100%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아니, 한시라도 시급한 법 아닙니까?

○소병철 위원 다음 주 화요일 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 김도읍 아니, 그런데 법사위가 안 열리면,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게.....

○소병철 위원 19일 날.....

○위원장 김도읍 그렇지 않습니다. 그간에라도 이 법을 통해.....

○소병철 위원 아니, 이 법이 통과된다고 지금 당장 2주 사이에 뭐가 시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도읍 아니, 뭐라고 나무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시는 건 좋은데.....

○소병철 위원 아니,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도읍 이게 필요한 법이라고 판단하시면.....

○소병철 위원 이 공급망법에 대해서 다음 주에 논의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의 대책이.....

○장동혁 위원 법은 필요한데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서 남겨 둔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소병철 위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도읍 아니, 그야말로 이것은.....

차관님, 지금 소병철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된 요지는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왜 요소수 대외의존도를 줄이지 않았냐. 그러면 국내에서 생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위원장 김도읍 국내에서 요소수가 생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 또한 어제오늘 일입니까? 이게 이 정부 잘못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아닙니다. 2010년까지 국내에서 요소를 생산하다가 그게 중국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10년부터 생산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다변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기업들이 겪고 나서 사실은 비용을 좀 더 부담하더라도 다른 나라로부터 조달을 했었습니다. 한 게 한 70%대 정도까지는 떨어졌었습니다. 떨어졌는데 중국이 제대로 수출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도 훨씬 싸고 그리고 품질도 좋고 하다 보니까 다시 중국으로 기업들이 조달하는 루트를 바꾼 겁니다. 바꾼 건데 과거 때하고 다른 것은 그 당시에 겪으면서 사우디든 베트남이든 다른 나라와 어떻게 보면 급할 때 조달할 수 있는 루트를 뚫어 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상황에서도 과거하고는 다르게 바로바로 다른 나라로부터 도입할 수 있는 과정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난번에 겪었던 상황과는 저희들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기업들 부담을 좀 덜어 주는 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예,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 소병철 위원입니다.

사실 차관님 답변을 하나하나 반박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수입선 다변화를 하겠다고 예전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물어보시니까 마치 가격경쟁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일단 정점식 간사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일리가 있지만 법안을 먼저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니까 통과를 하되, 정점식 간사님과 의견을 나눈 게 그겁니다. 공급망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는 결국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

이, 자꾸 전략적인 물자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언론에 나온 것 보면 미국 등등 어디든 부랴부랴 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점식 간사님 말씀하는 취지를 충분히 수용해서 오늘 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는데 조건이 있어요. 지금 요소수 사태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절대 전략적으로 그러는 것 아닙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대책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은 대책을 세워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양당 정책위의장 회의가 있으니까 내일 아니면 늦어도 월요일까지 빨리 정책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 주시는 걸로 정 간사님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0항부터 제172항까지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7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1)

174.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8)

175.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9)

17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7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7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7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8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81.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8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83.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8)

184.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9)

18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3)
(18시23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173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부터 제185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13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만 181항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의사일정 제173항부터 제180항까지 및 제182항부터 제185항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6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검토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부처가 안 제20조 등 개정안에서 마련하고 있는 각종 특례의 세부적인 사항이나 문구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해당 관계부처, 행정안전부 및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2페이지의 끝부분입니다.

안 제111조제3항은 전북자치도지사가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국가 공기업의 범위 등을 도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법의 경우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8항은 검토 결과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정의무의 내용으로 중요한 사항인 침수방지시설물의 범위를 행정규칙인 수방기준이 아닌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0항은 검토 결과 현행법이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 부정사용죄도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마련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3항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은 시스템 연계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유되는 정보가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이 있어 경찰청과 협의하여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 등의 긴급조치 또는 피난 명령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를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4항은 안 제19조제1항에 대하여 정보의 공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이 있어 소방청과 협의하여 연계 시스템 구축 목적을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5항 등 2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제173항 등 5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한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님, 김승호 인사혁신처장님, 윤희근 경찰청장님, 남화영 소방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또한 제179항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신문규 교육부 기조실장님께서도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소병철 위원 저는 지금 제 눈을 의심할 정도입니다. 법사위원장님이 여당 간사한테 ‘전북특별법하고 중부내륙법을 잡아’라고 말씀을 두 번 하시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국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법사위원장님이……

○위원장 김도읍 아니, 당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

○소병철 위원 제 발언 중입니다. 위원장님도 발언하시려면 끼어드시면 안 돼요.

당 내 이야기면 회의장 밖에서 말씀하셔야지

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사위원장이 여당 간사한테 대놓고 ‘잡아. 잡아’ 두 번 하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2개 법을…… 사실은 아까 간사님이 오셔 가지고 6시까지 법안 심사하자는 것에 대해서 간사님이 생각하는 6시와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인 6시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6시 말씀을 하니까 민주당 위원들이 전부 행사들에 대해서 시간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가 위원님들께 정 간사님께서 법들을 통과시키자고 해서, 제가 간사로서 위원님들한테 신신당부를 해 가지고 다 약속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정 간사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게 전북특별법하고 중부내륙법을 통과시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 가지고 합의를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이 당 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법사위 회의장이지 국민의힘 의총 하거나 협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어떻게 대놓고, 민주당 위원들을 바지저고리로 압니까? 어떻게 회의장에서 대놓고 여당 간사한테 ‘잡아. 잡아’.

정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지금 제가 목격하고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로 법안 심사에 대해서, 앞으로 정 간사님과 저하고 협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간사가 정점식, 간사가 김도읍, 위원장 김도읍 이렇게 법사위를 운영하는 겁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목소리 좀 낮추세요.

○소병철 위원 흥분 안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부끄러운 줄 아세요!

○위원장 김도읍 예.

○소병철 위원 어떻게 위원장이 여당 간사한테 법을 ‘잡아. 잡아’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김도읍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범계 위원 말이 안 돼.

○위원장 김도읍 말이 되고 안 되고 간에, 첫째 제가 정점식 간사에게 제 의사표시 하는 것에 대해서 들으신 모양인데, 의사표시 하는 것 안 됩니까?

○소병철 위원 지금 법사위 회의장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법사위 회의장이니까 그러지요.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소병철 위원 아니, 서로 이야기하시려면 밖에서 하셔야지요.

○위원장 김도읍 지금 회의 진행하는데 밖에 나갈 계제가 됩니까?

○소병철 위원 그러면 미리 이야기하고 오셨어야지요.

○위원장 김도읍 발언 기회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6시까지 회의하기로 누가 결정을 했지요?

○소병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도읍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소병철 위원 6시 말씀할 때 의사소통에 서로 오해가 있었다고 그건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것 지금 논점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도읍 제가 이야기할게요. 끼어들지 마세요.

회의를 하다 보면, 토론이 길어지다 보면 마치는 시간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어떻게 6시까지하기로 했는데……

○소병철 위원 그게 논점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도읍 6시가 지나서 회의를 하느니 마느니,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들 약속까지 미루어 가면서 잡았다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까?

○소병철 위원 무슨 자랑입니까?

○위원장 김도읍 그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회의하다 보면?

○소병철 위원 6시 말씀은 여당 간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김도읍 조용히 하세요.

○소병철 위원 팩트만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도읍 회의를 하다 보면 길어질 수 있는데 이게 마치 큰 아량이라도 베풀 듯이……

○소병철 위원 아량이라고 베풀 듯이 말한 적 없어요.

○위원장 김도읍 말씀하신 것 속기록 보세요.

나는 그걸 보고 놀랐고, 저도 내부적으로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법안 심사를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걸 왜 듣습니까?

○소병철 위원 지나가는 사람 누구한테나 물어보세요. 법사위원장이 간사에게 법을 ‘잡아. 잡아’ 하는 걸 회의장에서……

○위원장 김도읍 체통 좀 지키고 가만 계세요. 뭘 ‘잡아. 잡아’ 그래요. 그러면 전북자치도법도 잡으세요.

○소병철 위원 ‘2개 다 잡아. 잡아’,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참, 억지도 어떻게 그런 억지를 부립니까?

○소병철 위원 여기서 제가 두 번 듣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도읍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시시비비하지 마시고.

○소병철 위원 아니,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도읍 뭐가 중요합니까?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간사한테 법안 심사 관련해서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소병철 위원 법을 잡아라는 게 의견입니까?

○위원장 김도읍 그렇지요.

○소병철 위원 아니, 여야 간사끼리 합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도읍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법 잡자. 저 법 잡자’ 이야기 안 합니까?

○소병철 위원 정략적이라니요!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어디 있었어요!

○위원장 김도읍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법안 심사합시다.

○소병철 위원 사과하십시오!

○위원장 김도읍 그놈의 사과는……

○소병철 위원 아니, 법사위원장이 회의장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있는 데서……

○위원장 김도읍 위원장이 간사에게 한 이야기가…… 좋습니다. 제가 정점식 간사에게 결례가 되었다, 어떻게 그러면 정점식 간사가 사과를 요구하든지 해야지 그걸 왜 소병철 간사가 거기서……

○소병철 위원 민주당 위원들이 있는 데서 지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은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도읍 지금 그 말이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고 주장을 하십니까?

○소병철 위원 그러면 우리 민주당 의견 좀 들어 봅시다.

○위원장 김도읍 뭘 들어요, 당사자가 정점식 간사인데.

○소병철 위원 제가 지금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도읍 아니, 정점식 간사가 사과하라고 요구하면 내가 사과할 용의가 있으니까 가만 계세요.

○소병철 위원 듣는 우리도 지금 사과를 요구하지요.

○박주민 위원 정점식 간사님 빨리 요구해 주세요.

○정점식 위원 아니, 도대체…… 위원장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위원장님 목소리가 조금 커서 들렸는지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사과를 요구하고 이렇게 위원회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납득을 하기 어렵습니다.

6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소병철 간사님께서도 서로 의사소통에 약간 미스매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180건 가까이 되니까 빨리 진행을 해서 6시에 마치는 걸 목표로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으니까 아마, 저는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는 데 6시까지 빨리 진행해서 하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일부 민주당 위원님께서는 6시 되면 회의를, 안건 처리를 못 하더라도 회의를 중단한다, 산회를 한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진의가 왜곡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병철 위원 간사님, 그 부분은 논점이 아니잖아요.

○정점식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위원장과 제가 나눈 것은 같은 당 소속 법사위원으로서 사적인 대화였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철 위원 민주당 위원이 듣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사과 요구는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게 논점이다 아니다는……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게 11월 22일 날 제가 법안 심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얼마나 저를 닦달을 했습니까.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6시 말은 우리 간사님이 하셨어요.

○위원장 김도읍 얼마나 닦달을 하셨습니까?

○소병철 위원 무슨 난데없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도읍 끝내 홍익표 원내대표도 500건 민생법안이 남았는데 법사위원장이 처리 안 했다고 저를 공개적으로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소병철 위원 오늘 이야기만 집중합시다.

○위원장 김도읍 그런데 정작 열어 놓고 보니까 안건 처리를 못 하더라도 6시에 마치자? 이게 앞뒤가 맞는 주장입니까?

○소병철 위원 6시 이야기는 우리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소병철 위원 국민의힘 위원님이 6시 말씀을 했는데……

○위원장 김도읍 속기록 보세요.

○소병철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우리 위원장님이 ‘법 잡아. 잡아’를 말씀드리는데 왜 엉뚱한 걸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도읍 그걸 왜 관여를 합니까? 저희 당 내 이야기 하는데.

○정점식 위원 민주당 위원님들 중에서 내가 아까 6시 발언을 했을 때 회의 중단하고 6시에 마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사과드립니다.

○김의겸 위원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소병철 위원 그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자꾸 그걸 말씀하니까……

○정점식 위원 아니, 계속 그것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요.

○김의겸 위원 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정말 전북특자도법을 잡아라고 하신 게 맞습니까?

○위원장 김도읍 맞습니다.

○김의겸 위원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도읍 그걸 내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김의겸 위원 그러면 의견을 말씀하시고……
(장내 소란)

○정점식 위원 그게 아니고 이렇게 법안 심사를 하다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심사를 계속하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위원장 김도읍 충분하게 논의가 된 것 같고요.

자, 법안 심사합니다. 바쁘시다면서요? 법안 심사합니다.

○박범계 위원 저는 안 바빠요.

○소병철 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 발언권 쥐 보세요.

위원장님, 그것 ‘잡아. 잡아’를 쪽지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사진 찍히면 그것 자체도 위원장의 공정한 의사진행을 의심받게 되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들리게끔, 우리 소병철 간사께 들리게끔 두 번씩이나 그랬다는 것은 위원장의 공정한 진행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당 소속의 간사라 하더라도 간사직이 있고 간사 간 협의가 있는 거고 간사 간 협의가 있으면 위원장이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김도읍 아니, 간사 간 협의에 대해서 아까……

○박범계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법사위 시작할 때부터 한번 생각해 봐요. 예전에 박영선 위원장이나 권성동 위원장이나 또 윤호중 위원장이나 쪽지로 여기 우리 당 위원한테 예를 들어서 ‘그거 잡아’. 그런데 그게 기자의 카메라에 잡혀도 그것도 창피한 일이에요.

○위원장 김도읍 글썄, 나는 그런 전례는 본 적이 없어요.

○박범계 위원 그런데 소리가 들리게끔 그렇게 한 것은 위원장이 지난번에 처리 안 해 가지고 유감 표시를 했듯이 그건 공정한 진행에 의심을 받는 유감스러운 처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무슨 6시 퇴근으로 그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우리 소병철 간사 인격을 모독하는 거지, 그것은.

○위원장 김도읍 지금 마이크 드렸나요?

○박범계 위원 다 했어요, 이제.

○위원장 김도읍 그렇게 넘어갑시다.

○박범계 위원 그걸 그렇게 ‘잡아. 잡아’ 하는 것은 품위에도 안 맞고 격에도 안 맞는 거예요.

○위원장 김도읍 아이고 박범계 위원님, 어떻게 제 품위까지 그렇게 걱정해 주십니까?

○박범계 위원 빨리합시다.

○위원장 김도읍 아니, 우리 당끼리 이야기한 것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하지 마십시오.

○박범계 위원 이제 그러면 잡지 마요. ‘잡아. 잡아’를 상쇄하려면 잡지 않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도읍 그 또한 남의 당 위원님한테 그걸 왜 그렇게 강요를 하십니까?

○박범계 위원 이 법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잡아. 잡아’ 그러셨어.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시지요.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발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십시오.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십시오.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도읍 어지간히 하십시오.

○소병철 위원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병철 위원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지금 진행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 발언권 주시면 이야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발언권을 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위원장 김도읍 말씀 충분히 하셨잖아요.

○소병철 위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도읍 마무리 안 하셨습니까?

○소병철 위원 안 했습니다.

발언권 좀 주시면 하고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김도읍 정말 참 힘듭니다. 소병철 간사님, 힘듭니다.

발언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들어봅시다.

○소병철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잡아. 잡아’를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저희는 아니라고 말씀해서 그 부분은 견해가 일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께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요구를 했던 것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박범계 위원님이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나가는 사람 누구한테나 국회에 있는 사람한테 법사위원장이 여당 간사한테 ‘잡아. 잡아’ 이렇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물어보면 저는 대답이 아니라고 나올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진행을 합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못 하겠다고 하시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유감

표명을 안 하시면 민주당은 정식으로 국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삼의 기관에서 과연 그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리끼리 이야기할 내용을 정회를 할 수가 없어서 잡아, 잡아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생각한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 하시면 더 이상 문제 삼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면서 계속 무슨 6시 부분은 지금 말씀한 내용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옛날 일까지 끄집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 문제는 저는 여기서 매듭을 짓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잡아. 잡아’ 두 번 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당 내 사항은 회의장 밖에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걸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같은 국민의힘 위원들끼리 충분히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제삼의 기관에 할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또다시 위원장님께서 법사위 진행되는데 갑자기 여당 간사나 여당 위원님한테 마치 지시하듯이 ‘잡아. 잡아’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누가 그것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나는 그렇게 못 하겠다 하시면 회의 진행하시되 저도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이 부분을 국회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제삼의 기관에 뭘 하시겠다고요?

○소병철 위원 그건 저희가 선택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선택할 선택지가 제가 상상이 안 가서 그래요.

○소병철 위원 어느 기관이냐에 따라서 위원장님의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이 달라진다는 뜻입니까?

○위원장 김도읍 겁박합니까?

○소병철 위원 겁박 안 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김도읍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사퇴하라, 안 그러면 청문회 못 한다. 또 11월 22일 날 회의 못 한 데 대해서 사과하라. 또 국민께 사과했더니 또 왜 그게 반쪽짜리 사과하느냐

고 또…… 오늘 또 사과하라.

○소병철 위원 반쪽짜리 사과 말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대변인이 했대요.

○소병철 위원 우리는 법사위 아닙니까?

○위원장 김도읍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당내 동료 위원들끼리 의사소통은 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병철 간사님께서 법안 심사와 관련하여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뜻 맞지요?

○소병철 위원 예.

○위원장 김도읍 사과해 드리지요.

○소병철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잡아라 잡아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점식 간사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그렇게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도읍 조용히 좀 하세요. 김도읍이 그렇게 싫습니까?

○소병철 위원 저 좋아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받아야 될 사과는 아니지만 그냥 회의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법안 심사를 위해서 제가 소간사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제 시원하십니까?

○소병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박범계 위원 대체토론.

○위원장 김도읍 박범계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박범계 위원 유보 통합 관련된 부처가……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교육부 기조실장과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실장님, 일부 의견 중에, 제가 이 법안 통과를 막자는 건 아니고요. 우려가 있어서, 현재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의 여러 교육법 관련 조항에 ‘영유아 보육·교육’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법안에 도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데 지금은 학교 교육, 유아 교육, 영유아 보육 이렇게 돼 있고 영유아 보육은 보건복지부가 소관을 했지요. 그렇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래서 영유아 보육·교육 해서

교육부 소관으로 사무를 이관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내셨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듯합니다. 그 우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예, 저희도 들어서 알고 있고요. 개정안 문구에 대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님 모두가 상당한 시간 논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배경이 교육부로 넘어가는 데 교육적 의미, 우리 아이들이 줄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교육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라고 여야 위원들이 모두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 교육이 들어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을 때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만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 나와서 정부 입장에서는 행안위에서 논의된 의견을 존중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범계 위원 교사, 노동조합 등 여러 단체에서 이 개념 정의가 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저희가 유치원 교육 부분은 기존의 정부조직법에 학교 교육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실제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그렇게 법체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현재 복지부 업무의 영유아 보육에서 가져오면서 영유아 보육·교육으로 행안위에서 용어가 정리됐고요. 이 부분은 저희는 말씀드렸습시다만 교육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이 교육이 없었을 때와 있을 때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유보 통합에서 의미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행정 그리고 저희가 중앙부처 그리고 내려갔을 때 시·도교육청 시도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측면에서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측면에서의 문제도 저희 관련되는 부분에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명시적으로 헌법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유아 교육이라는 유사 개념 정의와 충돌, 모순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충돌 부분, 유아 교육과 영유아 보육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유아

교육·보육, 누리 과정을 통해서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육 또는 교육·보육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저희로 봐서는 약간 생소한 용어일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선진국가에서도 통합적 개념을 사용하는 게 지금 시대적 흐름이고 일반적인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우려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지혜롭게 잘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그 부분 주신 말씀 저희가 해서 실행 과정에서 잘 설득하고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소병철 위원 저……

○위원장 김도읍 하십시오.

○소병철 위원 소병철 위원입니다.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님이 나와 계신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실장님, 사실 제가 지금 법사위 활동을 쭉 하면서 예산에 부대의견은 자주 붙이지만 법안에 부대의견 붙이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지요, 실장님?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사실은 정책 부분도 상당히 부대의견을 많이 붙여 왔었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런데 저희가 법사위에서 보면 논란이 됐던 법안에 부대의견이 붙은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붙어 있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이 부대의견을 단 취지는 저희가 관리체제를 일원화하고 이후에……

○소병철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법사위에 왔는데도 계속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는 것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예, 듣고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래서 지금 어렵게 법안을 합의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키면서 오

죽하면 부대의견까지 붙인 것 아닙니까? 우선 이 부대의견에 보면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관련된 부분은 정책 연구 등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 반대 의견들 보면 염려를 굉장히 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기관들에서도 과연 지금 현재의 준비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부대의견을 3개월 내에 시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네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법률 시행은 6개월의 유예를 받았고요. 저희가 3개월간 부대의견에 대해서 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이 부분.

○소병철 위원 특히 지금 가항에 보면 국가재정투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이 부분은 국가 재정 당국과도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예.

○소병철 위원 이 부대의견 달 때 일용 재정 당국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 왔습니다.

○소병철 위원 재정 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겁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확정은 아니지만 제가 직접 관련 부처의 예산실장과 계속 소통해 왔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지금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 참 굉장히 애매한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부에서 이행을 할 겁니다. 재정 당국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병철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공감

이런 것 하면 무슨 감성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이 부분은 확실히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조금만 발언 한 1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반대 의견이 있고 이 문제는 정말 거의 10년, 20년 된 숙제지 않습니까?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 통합이 과연 정상적으로 진행되는가 우려를 하니까 이 법이 통과된 뒤에도 우리 주무 당국에서는 법이 통과됐다고 해 가지고 잠시라도 소홀히 하시지 말고 법 통과 전과 똑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교육 당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주신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서 최선을 다해서 완성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지금 그 외에 나, 다, 라가 전부 논점이 있는 부대의견이예요. 사실 이것 걱정이 많이 되는데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약속을 믿고 오늘 그러면 실장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73항, 174항, 179항, 181항, 182항, 18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5항부터 178항까지, 180항, 183항, 184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권 칠 승	김 도 읍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의 겸	박 범 계	박 용 진	박 주 민
박 형 수	소 병 철	송 기 현	유 상 범
이 탄 희	장 동 혁	전 주 혜	정 점 식
조 정 훈			

○청가 위원(1인)

조 수 진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정	성	희
전 문 위 원	한	석	현
전 문 위 원	김	영	일
전 문 위 원	박	동	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감 사 원 장	최	재	해
기획재정부			
제 1 차 관	김	병	환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안	상	열
교육부			
차 관 직 무 대 리	나	주	범
기 획 조 정 실 장	신	문	규
외 교 부 제 1 차 관	장	호	진
통 일 부 차 관	문	승	현
법 무 부 장 관	한	동	훈
국 방 부 차 관	김	선	호
행정안전부			
차 관 보	김	민	재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	한	경
국 가 보 훈 부 차 관	윤	중	진
문화체육관광부			
제 2 차 관	장	미	란
관 광 정 책 국 장	박	중	택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한		훈
산업통상자원부			
제 1 차 관	장	영	진
제 2 차 관	강	경	성
보건복지부			
제 1 차 관	이	기	일
제 2 차 관	박	민	수
환 경 부 차 관	임	상	준
고 용 노 동 부 차 관	이	성	희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	원	국
해 양 수 산 부 차 관	박	성	훈

중소벤처기업부

차	관	오	기	웅
글로벌성장정책관		최	원	영
인사혁신처장		김	승	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	유	경
조달청장		김	윤	상
병무청장		이	기	식
방위사업청장		엄	동	환
경찰청장		윤	희	근
소방청장		남	화	영
문화재청장		최	응	천
농촌진흥청장		조	재	호
산림청장		남	성	현
질병관리청장		지	영	미
해양경찰청장		김	용	진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	홍	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	소	영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조사위원회부위원장		안	종	철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장	김	상	환
--------	---	---	---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사무처장	박	종	문
------	---	---	---

【보고사항】

○의안 회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4. 이탄희·허숙정·권철승·박성준·
한준호·박주민·정성호·김교홍·홍영표·
김상희·강득구·안규백 의원 발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4. 윤영찬·한병도·설훈·이상민·
윤건영·이병훈·이원욱·윤미향·홍정민·
임호선·박대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5일 회부됨